



2020 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1 년 2 월 25 일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확 인 서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1. 02. 25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현 만 (서명) 

목 차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3
다. 관련 규정	6
2. 이사회	7
가. 역할(권한과 책임)	7
나. 구성(이사)	13
다. 활동내역	21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39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2
가. 역할(권한과 책임)	42
나. 구성	42
다. 선임기준.....	43
라. 활동내역 및 평가	46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49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81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81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113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113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14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117
바. 사외이사 평가.....	117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21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22
자.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126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129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129
나.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29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132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35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38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139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139
6. 감사위원회	141
가. 역할(권한과 책무)	141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44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46
라. 감사보조조직 등	153

7. 위험관리위원회	155
가. 역할(권한과 책무)	155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15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60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66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166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167
가. 총괄	167
나. 구성	168
다. 권한과 책임	170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74
2. 보수체계	178
가. 주요사항	178
나. 보수 세부사항	183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85

[첨부]

첨부 1. 정관	192
첨부 2. 지배구조 내부규범	218
첨부 3. 이사회규정.....	235
첨부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44
첨부 5. 감사위원회 규정.....	247
첨부 6. 위험관리규정.....	255
첨부 7. 보수위원회 규정.....	272
첨부 8. 내부통제기준.....	275
첨부 9. 윤리강령.....	318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원칙]

미래에셋대우는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꾸준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영진은 윤리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는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미래에셋대우의 주주는 자신의 권리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정책]

미래에셋대우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지배구조 정책 및 운영실태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와 경영진 견제 역할을 위해 회사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회사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해 적법성·공정성·사업성 등을 확

보하도록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 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는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년말 기준 이사회는 57% 사외이사로 구성)

위와 같은 견제 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인종, 성별, 종교, 출신지역, 국적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20년말 기준 금융투자 분야 3명, 경제·경영 분야 1명, 재무·회계 분야 2명, 신성장 분야 1명)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지속적 교육 실시 및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 구축을 통해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사외이사는 관련 법규 상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으로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회사 경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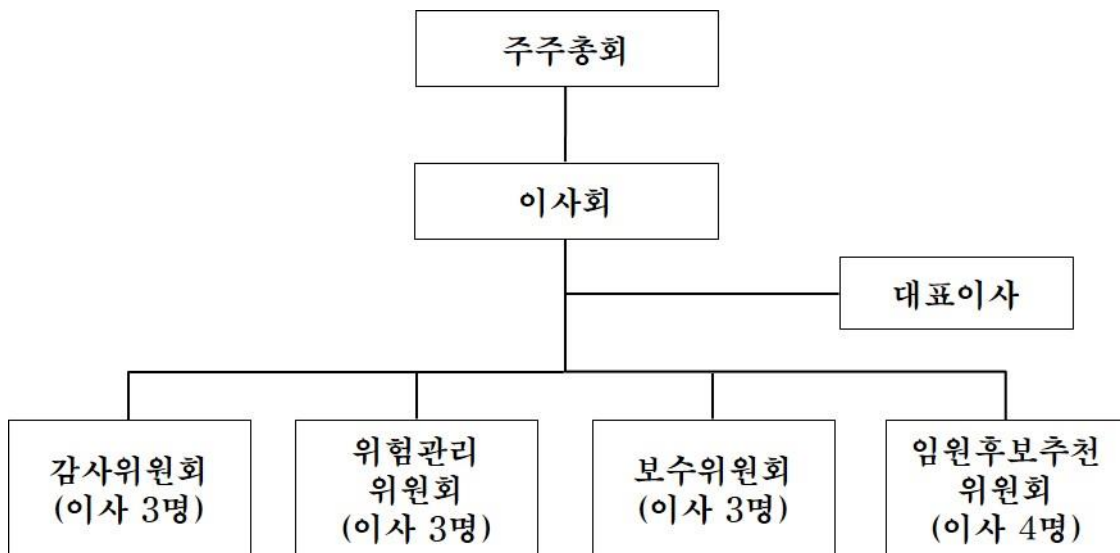
지배구조 정책 및 운영실태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데, 동 보고서를 통해 i)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구성·역할·활동내역, ii) 이사의 독립성·전문성, iii) 감사제도, iv) 임원의 보수, v) 이해관

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지배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회사 경영의 투명성·건정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사항을 금융투자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http://www.miraeassetdaewoo.com>)에 충실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래에셋대우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책 및 운영실태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공시함으로써 감독당국이나 시장의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출일 기준)



2) 지배구조의 특징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7명의 등기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는 4인으로서 상

법 및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금융투자 분야 3명, 경제·경영 분야 1명, 재무·회계 분야 2명, 신성장 분야 1명으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사외이사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독립성 및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각 사외이사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의 결격사유 및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심사결과에 관한 내용을 금융위원회 보고 및 금융투자협회,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있으며, 평가실시 여부에 대해서 본 보고서를 통해 금융투자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를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항목으로는 이사의 역할, 전문성, 이해도, 윤리성·책임성, 공정성 등이며,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회의 참석률(75% 이상 참석 여부) 또한 중요 사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임기한에 대한 제한(총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항에 따라 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위원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감사위원회의 경우 2/3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 소속된 사외이사 중 1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 (요약)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성 (사외이사/ 구성원)	의장/ 위원장	관련 규정
이사회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대해 심의 및 의결 및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등	4/7	조성일 (사외이사)	정관, 지배구조내부 규범, 이사회규정
임원 후보추천 위원회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등	3/4	정용선 (사외이사)	지배구조내부 규범, 임원후보추천 위원회규정
감사위원회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구축, 회사의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해 내부감사 계획을 수립·집행 등	3/3	정용선 (사외이사)	정관, 지배구조내부 규범, 감사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상시점검, 매년 보상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등	3/3	조성일 (사외이사)	지배구조내부 규범, 보수위원회규정
위험관리 위원회	회사의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을 위한 총괄적인 감독기능 수행 및 통제환경의 조성,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	2/3	조성일 (사외이사)	지배구조내부 규범, 위험관리규정

다. 관련 규정

- 첨부 1. 정관
- 첨부 2.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 3. 이사회규정
- 첨부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 5.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 6. 위험관리규정
- 첨부 7. 보수위원회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건전경영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이사회규정별표 이사회 결의사항 6).

2020년 경영목표·전략에 대해 경영진 및 사외이사 의견을 수렴하여, '20년 1월 개최된 제 52기 제 1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20년 경영목표·전략을 승인·확정하였습니다.

○ 2020 년 경영전략

- 연결세전이익 9,000 억원
- 중점 추진방향

핵심전략	추진 과제
Glob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와 해외법인 협업을 통한 Global Biz 플랫폼 구축 · 해외법인 세전이익 확대
Inves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 신규 Biz 추진 : 공모리츠 등 대체투자 확대 · PI 수익 증대
Digit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플랫폼 연계 비즈니스 추진 · 전사 Digital Transformation 확대 및 생산성 증대
Pen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VIP,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 · 글로벌 우량자산 기반 고객자산 리벨런싱

나) 정관변경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이사회규정 이사회 결의사항 1. 나. 1)).

2020 년 중 해당 안건은 부의된 바 없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승인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회사의 연간 예산(임직원 보수 포함) 편성을 심의·의결합니다. 이 경우 예산은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함께 심의·의결합니다. (이사회규정 별표 이사회 결의사항 7) 이에 따라 '21 년 예산은 '21 년 1 월 개최된 제 53 기 제 2 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19년 결산안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자가 '20년 1월 초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승인 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20년 3월 제52기 제4차 이사회에 '19년 결산안을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최종 제출된 '19년 결산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FY2019 별도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자산총계	69,411,355	영업수익	12,762,279
부채총계	60,713,190	영업이익	602,264
자본금	4,101,961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630,243
자본총계	8,698,165	당기순이익	448,721

○ FY2019 연결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자산총계	133,149,798	영업수익	15,436,916
부채총계	123,956,162	영업이익	727,954
자본금	4,101,961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893,722
자본총계	9,193,636	당기순이익	664,250

○ 이익배당

- 보통주 : 1주당 260원(시가배당율 : 3.4%)
- 우선주(미래에셋대우우) : 1주당 286원(시가배당율 : 6.0%)
- 우선주(미래에셋대우2우B) : 1주당 260원(시가배당율 : 6.1%)

'20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결산안(배당 포함)이 승인되었으며, 현금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되었습니다.

라)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회사의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이사회규정 이사회결의사항 1. 나. 4)).

2020년 중 해당 안건은 부의된 바 없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계 운영,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별표 이사회 결의사항 5. 나.). 2020년 중 내부통제기준의 개정은 없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년 12월에 개최된 제 52기 제 20차 이사회에 ‘내부통제체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보고’로 제출/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 그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연 1회 제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년 12월에 개최된 제 52기 제 20차 이사회에 ‘2020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로 제출/보고하였습니다.

정관 제 38조의 2 제 1항, 이사회규정 제 12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위험관리위원회에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기준 수립·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가 경영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한 위험관리규정을 사전 심의하고, 이사회는 위험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최종 의결합니다. 2020년 중 위험관리규정 개정은 없었으며,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7. 위험관리위원회’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경영승계업무

미래에셋대우는 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경영공백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규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지배구조 내부규범”)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동 사규의 개정 권한을 이사회에 두어 그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며, 동 사규의 제·개정 시 이를 공시하여 지배구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사규 제 5 장에는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장에서 1)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2)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3) 최고경영자의 자격,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5)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6)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영승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미래에셋대우는 상법 제 397 조의 2의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 398 조에 따라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 52 기 제 3 차, 제 6 차, 제 11 차, 제 16 차 이사회에 부여된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안)” 및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안)”은 거래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재적이사 전원 찬성으로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 11 조의 2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포함)을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 억원 이상의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 또는 용역 거래(대규모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 52 기 제 2 차, 제 3 차, 제 4 차, 제 6 차, 제 9 차, 제 10 차, 제 11 차, 제 13 차, 제 14 차, 제 15 차, 제 16 차, 제 17 차, 제 18 차, 제 19 차, 제 20 차 이사회를 통하여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와의 대규모내부거래 건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등기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이사회규정 § 4),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를 3 인 이상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정관 § 31),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사는 지배구조법 제 5 조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더불어 지배구조법 제 6 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의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 보고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제 6 조 제 3 항에 부합하는 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 년말 현재 사외이사는 경제·경영 분야 1 명, 재무·회계 분야 2 명, 신성장 분야 1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투자 분야 전문가인 사내이사 3 인을 포함하여 총 7 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는 사외이사인 조성일 이사가 출석 이사 전원의 동의로 '20 년 4 월 제 52 기 제 8 차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투명한 지배구조 정책을 위해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① 이사회회장 조성일

조성일 이사는 2019년 5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현재 이사회 의장 및 보수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성일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20.03~현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99~'20.02>, 중앙대학교 행정부총장<'17~'20.01>, 멀티에셋자산운용(주) 사외이사<'16.08~'19.04>,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사외이사<'16~'18>, DGB 자산운용(주) 사외이사<'14~'15>, 키움증권(주) 사외이사<'12~'15> 등

② 사내이사 최현만

최현만 이사는 2016년 11월 4일 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동일자로 제 48기 제 16차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최현만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주) 대표이사 수석부회장<'16~현재>, 미래에셋벤처투자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15~현재>, Mirae Asset Securities(HK)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07~현재>, 미래에셋생명(주) 대표이사 수석부회장<'12~'16>, 미래에셋증권(주) 대표이사<'99~'12>,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97~'99> 등

③ 사내이사 조용기

조용기 이사는 2017년 3월 24일 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동일자로 제 49기 제 3차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주) 대표이사 부회장<'17~현재>, 미래에셋증권(주) 대표이사 사장 <'10~'16>, 하나은행<'98~'99>, 보람은행<'91~'98> 등

④ 사내이사 김상태

김상태 이사는 2018년 3월 27일 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사장 직위로 IB 부문 총괄이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주) IB 부문 총괄<'18~현재>, IB 사업부문 대표<'14~'18>, 유진투자증권기업금융총괄 상무<'10~'13>, 메리츠종합금융 IB 사업본부장<'07~'10>, 대우증권<'89~'07> 등

⑤ 사외이사 정용선

정용선 이사는 2019년 5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최초 선임되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현재 감사위원장, 임원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용선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호석유화학(주) 사외이사<'19~현재>, 한국리츠협회 및 에이치더블유컨설팅 고문 (비상근)<'19~현재>, 제 4대 한국리츠협회 회장<'17~'19>, 코람코자산신탁 대표

이사 사장<'13~'19>, 삼성자산운용(주) 사외이사<'10~'13>, 법무법인 화우 고문 <'08~'13>, 금융감독원 증권시장담당 부원장보<'06~'08> 등.

⑥ 사외이사 김성곤

김성곤 이사는 2020년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보수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종근당 효종연구소장/신약연구소장<'12~현재>, (주)종근당 신약연구소장 <'10~'12>, (주)종근당 의약화학/공정개발 담당 이사<'10>, Merck 선임연구원 <'97~'09>, KIST 위촉연구원<'87~'89> 등

⑦ 사외이사 이젠타

이젠타 이사는 2020년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입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젠타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및 언어교육원장<'20.10~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국제학과 교수<'13~현재>, 美 시튼홀대학 경영대학 재무학과 조교수<'08~'13>, 美 드폴대학 경영대학 재무학과 초빙교수<'08>, 美 알라바마주립대 경영대학 재무학과 조교수<'06~'07> 등

⑧ 사외이사 황건호 ('20.3 월 퇴임)

황건호 이사는 2016 년 3 월 25 일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2020 년 3 월 25 일 임기만료 퇴임하였습니다. 약 48 개월의 임기동안 이사회 의장 및 보수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황건호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CEO 겸임교수<'07~>, 서강대학교 초빙교수<'16~'1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12~'14>,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09~'12>, 한국증권업협회 회장<'04~'09>, 메리츠증권(주) 대표이사(사장)<'99~'03>, 대우증권(주) 부사장<'96~'99> 등

⑨ 사외이사 김병일 ('20.3 월 퇴임)

김병일 이사는 2016 년 2 월 5 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최초 선임 되었으며, 2020 년 3 월 25 일 임기만료 퇴임하였습니다. 약 49 개월의 임기동안 감사위원회 위원장, 보수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하였습니다.

김병일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공교수<'07~현재>, 현대커머셜(주) 사외이사 <'15~'18>,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14~'15>,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08~'09>, (주)대현 상임감사<'99~'07>, 재정경제원 서기관 <'95~'99> 등

⑩ 사외이사 조윤제 ('20.4 월 퇴임)

조윤제 이사는 2020년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최초 선임 되었으며, 2020년 4월 17일 사임하였습니다. 약 1개월의 임기동안 이사회 의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조윤제 이사의 상세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17~>, 駐 미국 대사<'17~'19>,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97~'17>, 駐 영국 대사<'05~'08>,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03~'05>,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자문관<'95~'97>, 한국조세연구원 연구 부장, 부원장<'93~'96>, 국제통화기금 경제분석관<'89~'92>, 세계은행 선임경제 분석관<'84~'89, '92~'93> 등

(3) 요약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조성일	사외	사외이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 교수<'20.03~현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99~'20.02>, 중앙대학교 행정부총장<'17~'20.01>, 멀티에셋자산운용(주) 사외이사 <'16.08~'19.04>, 이베스트 투자증권(주) 사외이사 <'16~'18>, DGB 자산운용(주) 사외이사<'14~'15>, 키움증권(주) 사외이사<'12~'15>	19.5.8	21.3.24	20 개월	감사위 위험위 보수위
최현만	상임	수석 부회장 (대표이사)	미래에셋대우(주) 대표이사 수석부회장<'16~현재>, 미래에셋벤처투자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15~현재>, Mirae Asset Securities(HK) 기타 비상무이사(비상근)<'07~현재>, 미래에셋생명(주) 대표이사 수석부회장<'12~'16>, 미	16.11.4	21.3.24	50 개월	-

			래에셋증권(주) 대표이사 <'99~'12>, 미래에셋자산운 용 대표이사<'97~'99>				
조웅기	상임	부회장 (대표이사)	미래에셋대우(주) 대표이사 부 회장<'17~현재>, 미래에셋증 권(주) 대표이사 사장 <'10~'16>, 하나은행 <'98~'99>, 보람은행 <'91~'98>	17.3.24	21.3.24	46 개월	위험위
김상태	상임	사장	미래에셋대우(주) IB 부문 총괄 <'18~현재>, IB 사업부문 대 표<'14~'18>, 유진투자증권 기업금융총괄 상무 <'10~'13>, 메리츠종합금융 IB 사업본부장<'07~'10>, 대 우증권<'89~'07>	18.3.27	21.3.24	34 개월	임추위
정용선	사외	사외이사	금호석유화학(주) 사외이사 <'19~현재>, 한국리츠협회 및 에이치더블유컨설팅 고문 (비상근)<'19~현재>, 제 4 대 한국리츠협회 회장 <'17~'19>,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사장<'13~'19>, 삼 상자산운용(주) 사외이사 <'10~'13>, 법무법인 화우 고문<'08~'13>, 금융감독원 증권시장담당 부원장보 <'06~'08>	19.5.8	21.3.24	20 개월	감사위 보수위 임추위
김성곤	사외	사외이사	(주)종근당 효종연구소장/신약 연구소장<'12~현재>, (주)종근 당 신약연구소장<'10~'12>, (주)종근당 의약화학/공정개발 담당 이사<'10>, Merck 선임 연구원<'97~'09>, KIST 위 촉연구원<'87~'89>	20.3.25	22.03 (정기주 주총회 일)	12 개월	보수위 임추위
이젠탐	사외	사외이사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및 언어교육원장<'20.10~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국제학 과 교수<'13~현재>, 美 시튼 홀대학 경영대학 재무학과 조 교수<'08~'13>, 美 드폴대학 경영대학 재무학과 초빙교수	20.3.25	22.03 (정기주 주총회 일)	12 개월	감사위 위험위 임추위

			<'08>, 美 알라바마주립대 경영대학 재무학과 조교수 <'06~'07>				
황건호 (퇴임)	사외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CEO 겸임교수<'07~>, 서강대학교 초빙교수<'16~'1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12~'14>,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09~'12>, 한국증권업협회 회장<'04~'09>, 메리츠증권(주) 대표이사(사장)<'99~'03>, 대우증권(주) 부사장<'96~'99>	16.3.25	20.3.25 (퇴임일)	48 개월	-
김병일 (퇴임)	사외	-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공교수<'07~현재>, 현대커머셜(주) 사외이사<'15~'18>,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14~'15>,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08~'09>, (주)대현 상임감사<'99~'07>, 재정경제원 서기관<'95~'99>	16.2.5	20.3.25 (퇴임일)	49 개월	-
조운제 (퇴임)	사외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17~>, 駐 미국 대사<'17~'19>,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97~'17>, 駐 영국 대사<'05~'08>,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03~'05>,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자문관<'95~'97>,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부장, 부원장<'93~'96>, 국제통화기금 경제분석관<'89~'92>, 세계은행 선임경제분석관<'84~'89, '92~'93>	20.3.25	20.4.17 (사임일)	1 개월	-

※ 재임기간은 2020년 12월 기준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년에는 총 20 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참석률은 97%입니다. 높은 이사회 참석률을 통해 이사회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공유하여 이사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무진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년 중에 개최된 이사회 의 보고 및 의결 안건은 특이사항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제52기 제1차 이사회 : 2020년 1월 16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20년 1월 1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0년 그룹 위험한도 설정 (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그룹위험관리본부 업무 및 계획 보고								

- 제 52기 제 2차 이사회 : 2020년 1월 30일(오전 10시 30분)

[안건통지일 : 2020년 1월 2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제5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년 장기성과보수 지급률확정 및 지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자기주식 처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2019년 단기성과보수 지급 보고								
나. 2019년 감사결과 보고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맵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하나대체투자미국발전소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5-1호” 수익증권을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제 52기 제 3차 이사회 : 2020년 2월 20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20년 2월 1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주요주주와의 거래(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2019년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 및 점검 결과 보고								
나. 2019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활동 보고								
다. 2019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실적 보고								
라.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결과 보고								
마.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제출 보고								
바. 미래에셋벤처투자(주) 경영성과 및 경영계획 보고								

- 1)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주식 위탁수수료 취득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기 보유중인 “대조피에프브이(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주요주주(계열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바, 상법 제398조 및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기 보유중인 Bleriot US Bidco Inc. 에 대한 대출채권을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멀티에셋GlobalPrivateDeb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0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4)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멀티에셋GlobalPrivateDeb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0호”를 총액인수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제52기 제4차 이사회 : 2020년 3월 2일(오후 3시 30분)

[안건통지일 : 2020년 2월 2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제5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상정의안 결의(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제5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제51기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1) 2019년 제12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과 연수 및 숙박시설 지분 매매거래에 따른 양수가액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제 52 기 제 5 차 이사회 : 2020년 3월 20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20년 3월 1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자기주식 취득(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자기주식 취득 후 이익소각(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52기 제6차 이사회 : 2020년 3월 25일(오전 11시)

[안건통지일 : 2020년 3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운제	정용선	조성일	김성곤	이젠펠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운제	정용선	조성일	김성곤	이젠펠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이사회 의장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없음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대표이사 선임(案)	의결권 없음 ¹⁾	의결권 없음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사내이사 처우(案)	의결권 없음 ¹⁾	의결권 없음 ¹⁾	의결권 없음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무보증사채 발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 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 거래 정정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0년 3월 25일 황건호, 김병일 사외이사 임기만료 퇴임.

※ 2020년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사내이사 재선임 / 조성일, 정용선 사외이사 재선임 / 조운제, 김성곤, 이젠펠 사외이사 신규 선임

- 1)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이사회규정 제8조에 의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2)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주식 위탁수수료 취득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맵스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7호”를 총액인수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4) 2019년 19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미래에셋” 브랜드 사용료율을 정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제52기 제7차 이사회 : 2020년 3월 30일(오후 3시)

[안건통지일 : 2020년 3월 2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윤제	정용선	조성일	김성곤	이쥬마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윤제	정용선	조성일	김성곤	이쥬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 (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52 기 제 8 차 이사회 : 2020년 4월 17일(오후 5시)

[안건통지일 : 2020년 4월 1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조윤제	김성곤	이쥬마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조윤제	김성곤	이쥬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이사회 의장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없음 ¹⁾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나. 제51기 제1차 임시주주 총회개최 및 주식명의개 서정지 기준일 지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다. 준법감시인 임면(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라. 준법감시인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마. 2020년 상장지수증권 발 행한도증액 승인 및 일괄 신고서 제출(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 2020년 4월 17일 조윤제 사외이사 사임 (사임일 : 2020년 4월 17일, 사임 등기일: 2020년 6월 5일)

1)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이사회규정 제8조에 의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제52기 제9차 이사회 : 2020년 4월 23일(오전 9시 30분)

[안건통지일 : 2020년 4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조운제	김성곤	이철편마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조운제	김성곤	이철편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제52기 제1차 임시주주 총회 개최 및상정의안 결 의(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의결권 없음 ¹⁾	가결
나. 미국 內 LA법인 IB기능 뉴욕으로 통합(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다.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 (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 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 거래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나. 미래에셋 금융그룹 현황 보고('19.4Q)									
다. 그룹 공동투자 모니터링('19.4Q)									
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기본방향 보고									

※ 2020년 4월 17일 조운제 사외이사 사임 (사임일 : 2020년 4월 17일, 사임 등기일: 2020년 6월 5일)

- 1)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이사회규정 제8조에 의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2)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그룹웨어 업무운영 도급계약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기 보유중인 현대상선 23K 컨테이너선 6척 신조 선박금융 선순위 대출약정을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멀티에셋HMM초대형선박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4) 여수 경도 지구 내 부지 개발 사업 관련 지알디벨롭먼트(주)에 대출을 제공하면서 계열회사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제52기 제10차 이사회 : 2020년 5월 8일(오전 8시)

[안건통지일 : 2020년 5월 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조윤제	김성곤	이젠펠마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조윤제	김성곤	이젠펠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2020년 주주환원정책 (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나. 장기성과보수 이연 기준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 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Strategic Hotels & Resorts Profolio 투자 관련 소송 등 주요 이슈 발생 사항 보고									

※ 2020년 4월 17일 조윤제 사외이사 사임 (사임일 : 2020년 4월 17일, 사임 등기일: 2020년 6월 5일)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미국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제7호”에 추가출자를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제52기 제11차 이사회 : 2020년 5월 28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20년 5월 2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조운제	김성곤	이쥬마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조운제	김성곤	이쥬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2020년 상장지수증권 발행한도 증액 승인 및 일괄신고서 제출(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나. 주요주주와의 거래(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⁵⁾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⁶⁾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결과 보고									

※ 2020년 4월 17일 조운제 사외이사 사임 (사임일 : 2020년 4월 17일, 사임 등기일: 2020년 6월 5일)

- 1)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주식 위탁수수료 취득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당사가 보유중인 지알디벨롭먼트(주)에 대한 대출채권 중 일부를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스마트Q헤지포커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4)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산관리회사로 있는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에 총액인수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5)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9-1호”의 환헛지 정산대금융 추가출자를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6) 기 투자중인 “미래에셋맵스인디아프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의 신탁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제 52기 제 12차 이사회 : 2020년 6월 5일(오전 9시 30분)

[안건통지일 : 2020년 6월 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쥬마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쥬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자기주식 취득(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0년 4월 17일 조운제 사외이사 사임 (사임일 : 2020년 4월 17일, 사임 등기일: 2020년 6월 5일)

- 제52기 제13차 이사회 : 2020년 6월 25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20년 6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쥬마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쥬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2020년 상장지수증권 발행한도 증액 승인 및 일괄신고서 제출(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멀티에셋해외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6호”의 환헛지 정산대금융 추가출자를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스마트Q아시아헤지포커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제52기 제14차 이사회 : 2020년 7월 30일(오전 9시 30분)

[안건통지일 : 2020년 7월 2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젠펠마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젠펠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자기주식 취득(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네이버(주)와의 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한 변경계약 체결(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그룹위험관리규정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홍콩 현지법인 증자(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수용의 건(案)	보류							
4. 보고 안건								
가. 해외부동산 투자현황 부문감사결과 보고								
나.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다. 미래에셋 금융그룹 현황 보고('20.1Q)								
라. 그룹 공동투자 모니터링('20.1Q)								
마. 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결과 및 대응 계획								

1)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멀티에셋해외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1호”의 환헛지 정산대금융 추가출자를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제52기 제15차 이사회 : 2020년 8월 27일(오후 6시 30분)

[안건통지일 : 2020년 8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쥬마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쥬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수용의 건(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결과 보고								

- 1) 기 투자중인 “미래에셋맵스프린티어브라질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의 신탁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제52기 제16차 이사회 : 2020년 9월 24일(오전 10시 30분)

[안건통지일 : 2020년 9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젠펠마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젠펠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그룹내부통제 관련 사규 제·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그룹내부통제협의회 구성(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해외대체투자 및 재매각현황 부문감사 결과 보고								

- 1) 기 보유중인 HMM 23K 컨테이너선 6척 선조 선박금융 선순위 대출채권을 주요주주(계열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바, 상법 제398조 및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OCIO금리솔루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를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고객 요청에 따라 편입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제52기 제17차 이사회 : 2020년 10월 29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20년 10월 2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젠펠마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젠펠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자기주식 취득(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주주간약정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그룹내부통제협의회에 관한 보고								
나.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다. 미래에셋 금융그룹 현황 보고('20.2Q)								
라. 그룹 공동투자 모니터링('20.2Q)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OCIO연금솔루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를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고객 요청에 따라 편입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미래에셋 Innovative Growth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신탁재산을 출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미래에셋 Innovative Growth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고유재산을 출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제52기 제18차 이사회 : 2020년 11월 13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20년 11월 1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쥬마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쥬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미국사모부동산투자
신탁6-2호”에 추가출자를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
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제52기 제19차 이사회 : 2020년 11월 26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20년 11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쥬마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쥬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2021년 파생결합사채·증권,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발행예정금액 승인 및 일괄신고서의 제출(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그룹 이해상충 관리규정 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그룹 내부통제 업무수행 세부지침 보고								
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결과 보고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7-1호, 17-2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호”에 추가출자를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기 투자증권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미국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의 신탁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제52기 제20차 이사회 : 2020년 12월 23일(오전 11시)

[안건통지일 : 2020년 12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쥬마	
1. 이사 성명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쥬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2020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나. 2020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 보고								
다.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점검 결과 보고								
라.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20.3Q)								
마.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바. 미래에셋 금융그룹 현황('20.3Q)								
사. 그룹 공동투자 모니터링('20.3Q)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프린티어미국부동산투자신탁 4호”에 추가출자를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2020년 13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미래에셋스마트Q아시아헤지포커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의 투자금액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스마트Q아비트리지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를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고객 요청에 따라 편입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이사의 반대(보류 포함) 의견 내역

- 제52기 제14차 이사회 : 2020년 7월 30일

안건명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최현만	조웅기	김상태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젼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수용의 건(案)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본 평가는 미래에셋대우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1 회 이상 이사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이사회 역할, 구성 및 이사회 운영,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운영 모니터링 및 의사록 등 자료에 대한 서면조사, 모든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이사회 최종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사회 평가는 2021년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역할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적정하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이사에게 보고하여 그 심의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

고,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결의사항 제외).

미래에셋대우 이사회는 지난 2020 사업연도 동안 총 20차례 개최되었고, 97%의 높은 참여율로 회의 안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이사는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과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조언 및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회사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사회 지원부서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였고, 안건에 대한 자료 설명이 경영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이사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당 금융회사의 주요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일전까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 대한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2020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 대한 평가 점검은 2021년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은 기본역할(주주가치 향상 및 장기적 기업가치 개선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외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전문성(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이해도(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준비와 이해는 충실한지 여부 등), 윤리성·책임성(기업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공정성(의사결정시 경영진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구성되며, 이와 같은 점검은 서면조사로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서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 6 차 이사회(2020.03.25)에서 조운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최초 선임하였고, 2020년 4월 조운제 사외이사의 사임 표명에 따라 2020년 제 8 차 이사회(2020.04.17)에서 조성일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최초 선임하였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 16 조 및 제 17 조에 의거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 4 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1)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2) 금융회사에 적합한 전문성과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추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외이사, 3)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규정하고, 상시적으로 후보군을 탐색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을 실시하고, 이사회 구성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총 2 회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군을 탐색, 관리하고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후보를 이사회 및 주주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추천하였습니다.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4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3 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1 명을 사내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75%로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임원 후보 추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정용선 사외이사가 역임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주 1)}	임기만료일
김병일	(前)사외	(前)위원	'19.03.27	'20.03.25
조성일	(前)사외	(前)위원	'19.05.08	'20.03.25
조운제	(前)사외	(前)위원장	'20.03.25	'20.04.17
정용선	사외	위원장	'19.05.08	'21.03.24
김성곤	사외	위원	'20.03.25	'21.03.24
이젠펠	사외	위원	'20.03.25	'21.03.24
김상태	상임	위원	'18.03.27	'21.03.24

주 1) 최초 선임일 기준임

주 2) 제 52기 제 6 차 이사회(2020.03.25) 및 제 8 차 이사회(2020.04.17)에서 위원 변경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미래에셋대우는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임을 위하여 정관과 지배구조 내부규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을 통해 임원 후보 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구조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임원의 자격요건 중 법률상 요구하는 요건 외에 적극적 요건으로서 충실성·전문성·윤리성·책임성·공정성을 추가하여 임원 후보 추천시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 본 규범에서 이사라 함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를 말한다.

②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경우 비상임이사는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⑤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제37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 후보군은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의 재선임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원부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외 이사 및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후보 추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후보 추천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후보 추천 내역 전반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의 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정관 및 사규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장기간 금융·경영·법률·재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당사뿐 아니라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사내외 인력풀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전문가 후보군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받은 후보군은 관련 법령 및 당사 내규에 따른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이미 검증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충분한 시간의 검증기간을 통해 최종 의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미래에셋대우는 다양한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0 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 회 개최되었으며, 의결안건 4 개 모두 가결되어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최현만, 조용기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였고, 각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 의결되었습니다.

2020 년 기준 사외이사 · 감사위원 · 대표이사 전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선임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제 52기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0년 3월 2일(오후 2시)

[안건통지일 : 2020년 2월 2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정용선	김병일	조성일	김상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추천(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대표이사 후보 추천(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 중 정용선, 조성일 사외이사 추천 안건에 대해서 당사자는 의결 미실시함.
- 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추천 안건 중 정용선, 조성일 사외이사 추천 안건에 대해서 당사자는 의결 미실시함.

- 제 52기 제 2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0년 4월 23일(오전 9시)

[안건통지일 : 2020년 4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정용선	김성근	이젠펠	김상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추천(案)	찬성	찬성	의결권 없음 ¹⁾	찬성	가결

- 1) 본 안건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로 이젠펠 사외이사가 추천되어, 당사자는 의결 미실시함

3) 평가

당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는 동 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매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 후 결과를 이사회 위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이를 검토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 회 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위원회 역할,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모니터링 및 의사록 등 자료에 대한 서면조사, 모든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이사회 최종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2020 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는 2021 년 1 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후보자 1]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최현만
- (2) 출생연도 : 1961 년
- (3) 출신학교 : 광주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강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 (4) 경력

'89 년~'97 년 동원증권 지점장
'97 년~'99 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99 년~'12 년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12 년~'16 년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07 년~ (現) Mirae Asset Securities (HK)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
'15 년~ (現) 미래에셋벤처투자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
'16 년~ (現)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 정용선 /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정용선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임원후보추천위원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정용선 후보제안자는 대표이사 후보로 후보

추천 시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최현만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정용선 사외이사와 후보자 최현만 대표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최현만 수석부회장은 30년간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금융투자업, 집합투자업, 보험업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미래에셋금융그룹 내 주요 금융계열사에 근무하였습니다. 다년간 경영진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금융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통해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 왔으며 폭넓은 시각으로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국내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발전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후보자는 2016년 11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다년간 훌륭한 성과로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검증 받았으며,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후보자는 금융전문가로서 2020년 3월 2일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용선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소극적 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및 제 37 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 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임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최고경영자는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

최현만 후보자는 다년간의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종사 경력으로 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고, ②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③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서 회사가 정한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당사는 '20년 3월 선임된 최현만 대표이사에 대해 임원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현만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과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였고, 미래에셋대우 및 미래에셋그룹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여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로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역량과 자질이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2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최현만 후보자를 최고경영자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후보자 2]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조용기

(2) 출생연도 : 1964 년

(3) 출신학교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서강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4) 경력

'91 년~'98 년 보람은행
'98 년~'99 년 하나은행
'01 년~'02 년 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영업본부 부장
'02 년~'05 년 미래에셋증권 CW 본부장
'05 년~'06 년 미래에셋증권 IB 본부장
'06 년~'09 년 미래에셋증권 법인 CM사업부 대표
'09 년~'10 년 미래에셋증권 리테일 사업부 사장
'10 년~'16 년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사장
'17 년~(現)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부회장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 정용선 /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정용선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임원후보추천위원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정용선 후보제안자는 대표이사 후보로 후보추천 시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조용기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정용선 사외이사와 후보자 조용기 대표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조웅기 후보자는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 등 다년간 금융업에 종사하였고, 금융상품 사업부문, 리테일 및 법인 영업, 기업금융업무 등 다양한 금융투자업무 분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에서 다년간 경영진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금융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통해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후보자는 2017년 3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다년간 훌륭한 성과로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검증 받았으며,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후보자는 금융전문가로서 2020년 3월 2일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용선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소극적 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및 제 37 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 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임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최고경영자는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

조웅기 후보자는 다년간 미래에셋대우의 경영진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고, ②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③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서 회사가 정한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당사는 '20 년 3 월 선임된 조웅기 대표이사에 대해 임원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조웅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과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였고, 미래에셋대우 및 미래에셋그룹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여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로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역량과 자질이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2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웅기 후보자를 최고경영자로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감사위원 후보

[후보자 1]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정용선
- (2) 출생연도 : 1954 년
- (3) 출신학교 : 대광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국제전문가과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4) 경력

‘06 년~‘08 년 금융감독원 증권시장담당 부원장보 ‘08 년~‘13 년 법무법인 화우 고문 ‘10 년~‘13 년 삼성자산운용(주) 사외이사 ‘13 년~‘19.03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사장 ‘17 년~‘19.03 제 4 대 한국리츠협회 회장 ‘19.03~(現) 한국리츠협회 및 에이치더블유컨설팅 고문(비상근) ‘19.03~(現) 금호석유화학(주) 사외이사 ‘19.05~(現) 미래에셋대우(주) 사외이사
--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 김병일 /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김병일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김병일 사외이사와 후보자 정용선 사외이사는 민법상의 친족 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는 1982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감독원 감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금융업 전문가이자 재무, 회계 전문가입니다. 금융 감사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 및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1982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감독원 감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바, 금융업 전문가이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상법 제 542 조의 11 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소극적 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19 조	충족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82년 ~ ’08년 금융감독원)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 평가

후보자는 1982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감독원 감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금융업 전문가이자 재무, 회계 전문가입니다. 또한 금융 감사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 및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회사가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3) 본인 소명

당사는 ‘20년 3월 감사위원 선임시 선임된 정용선 감사위원에 대해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정용선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추천을 위해 2020년 3월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

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 등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독립성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감사위원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임원후보추천위원 중 본인 추천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의결권이 없었습니다.)

[후보자 2]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조성일
- (2) 출생연도 : 1954년
- (3) 출신학교 :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미시간대학교 국제경제대학원 석사,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4) 경력

'95년~'99년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12년~'15년 키움증권(주) 사외이사 '14년~'15년 DGB 자산운용(주) 사외이사 '16년~'18년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사외이사 '16.08~'19.04 멀티에셋자산운용(주) 사외이사 '17년~'20.01 중앙대학교 행정부총장 '99년~'20.02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03~(現)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19.05~(現) 미래에셋대우(주) 사외이사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 정용선 /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정용선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임원후보추천위원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후보자 조성일 사외이사는 2019년 5월부터 당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후보제안자와는 이사회 업무 등으로 교류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정용선 사외이사와 후보자 조성일 사외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는 경제학 석사 및 경영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재무전문가로서 다수의 금융투자회사 사외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금융 및 경영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 경영의사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소극적 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 평가

후보자는 경제학 석사 및 경영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재무전문가로서 다수 금융투자회사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등 금융 및 경영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 및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회사가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3) 본인 소명

당사는 ‘20 년 3 월 감사위원 선임시 선임된 조성일 감사위원에 대해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조성일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추천을 위해 2020년 3월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 등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독립성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감사위원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임원후보추천위원 중 본인 추천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의결권이 없었습니다.)

[후보자 3]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조운제
- (2) 출생연도 : 1952년
- (3) 출신학교 :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무역학,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4) 경력

'84년~'89년, '92년~'93년 세계은행 선임경제분석관 '89년~'92년 국제통화기금 경제분석관 '93년~'96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부장, 부원장 '95년~'97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자문관 '03년~'05년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05년~'08년 駐 영국 대사 '97년~'17년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7년~'19년 駐 미국 대사 '17년~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20.03~'20.04 미래에셋대우(주) 사외이사 ('20.04 사임)
--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 정용선 /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정용선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임원후보추천위원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정용선 사외이사와 후보자 조윤제 사외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분석관 및 주 영국과 미국 대사를 역임한 글로벌 및 경제 전문가로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및 경제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 경영의사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소극적 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 평가

후보자는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보유한 경제전문가로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분석관 및 주 영국과 미국 대사를 역임하는 등 금융 및 경영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 및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회사가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3) 본인 소명

당사는 ‘20 년 3 월 감사위원 선임시 선임된 조윤제 감사위원에 대해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조윤제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추천을 위해 2020년 3월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 등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독립성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감사위원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후보자 4]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이젠편마
- (2) 출생연도 : 1974년
- (3) 출신학교 : 제주여자고등학교, 서강대학교 경제학
벤더빌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벤더빌트대학교 오웬 경영대학원 재무학 박사
- (4) 경력

'06년~'07년 美 알라바마주립대 경영대학 재무학과 조교수
'08년 美 드폴대학 경영대학 재무학과 초빙교수
'08년~'13년 美 시튼홀대학 경영대학 재무학과 조교수
'13년~(現)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국제학과 교수
'20.10~(現)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및 언어교육원장
'20.03~(現) 미래에셋대우(주) 사외이사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 정용선 /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장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정용선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임원후보추천위원장 및 감사위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후보자 이젠펜 사외이사는 2020년 3월부터 당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후보제안자와는 이사회 업무 등으로 교류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정용선 사외이사와 후보자 이젠펜 사외이사는 민법상의 친족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는 재무학 박사로 미국 시튼홀대학, 드폴대학, 알라바마주립대에서 재무학과 교수로 8년('06년~'13년)간 종사하였고,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재무, 회계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경영의사결정 과정 및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재무학 박사 학위자이며, 미국 시튼홀대학, 드폴대학, 알라바마주립대에서 재무학과 교수로 8 년(‘06 년~’13 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상법 제 542 조의 11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19 조	충족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06 년 벤더빌트대학교 오웬 경영대학원 재무학 박사 ‘06 년~’13 년 알라바마주립대, 드폴대학, 시튼홀대학 재무학과 교수)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 평가

후보자는 재무학 박사로 미국 시튼홀대학, 드폴대학, 알라바마주립대에서 재무학과 교수로 8 년('06 년~'13 년)간 종사하였고,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재무, 회계 전문가 입니다. 재무, 회계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 및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회사가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3) 본인 소명

당사는 '20 년 6 월 감사위원 선임 시 선임된 이젠펜 감사위원에 대해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이젠펜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 추천을 위해 2020 년 4 월 제 2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 등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독립성이나 직무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감사위원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 명 중 3 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임원후보추천위원 중 본인 추천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의결권이 없었습니다.)

3)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제 52 기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성 명	출생 연도	출신학교	주요 경력	사외이사 경력 (2019년 이 사회 및 위원 회 참석률)
조성일	1954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미국 미시간대학교 국제경제대학원 석사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12~'15 키움증권(주) 사외이사 '14~'15 DGB 자산운용(주) 사외이사 '16~'18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사외이사 '16.08~'19.04 멀티에셋자산운용(주) 사 외이사 '17~'20.01 중앙대학교 행정부총장 '99~'20.02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20.03~(現)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명 예교수 '19.05~(現) 미래에셋대우(주) 사외이사	'19. 5 ~ (이사회 13 회 중 100% 참석, 위원회 8 회 중 100% 참석)
정용선	1954	대광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미시간주립대 대 학원 국제전문가과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원 최고경영자과정	'06~'08 금융감독원 증권시장담당 부원 장보 '08~'13 법무법인 화우 고문 '10~'13 삼성자산운용(주) 사외이사 '13~'19.03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사장 '17~'19.03 제 4 대 한국리츠협회 회장 '19.03~(現) 한국리츠협회 및 에이치더 블유컨설팅 고문(비상근) '19.03~(現) 금호석유화학(주) 사외이사 '19.05~(現) 미래에셋대우(주) 사외이사	'19. 5 ~ (이사회 13 회 중 100% 참석, 위원회 8 회 중 100% 참석)
김성곤	1962	서강대학교 화학과 서강대학교 화학과 유기화학 석사 피듀대학교 유기합성 화학 박사	'87~'89 KIST 위촉연구원 '97~'09 Merck 선임연구원 '10 (주)중근당 의약화학/공정개발 담 당 이사 '10~'12 (주)중근당 신약연구소장 '12.12~(現) (주)중근당 효종연구소장/신 약연구소장 '20.03~(現) 미래에셋대우(주) 사외이사	'20.03~ (신규선임)
이젬마	1974	제주여자고등학교 서강대학교 경제학 벤더빌트대학교 대학 원 경제학 석사 벤더빌트대학교 오웬 경영대학원 재무학 박사	'06~'07 美 알라바마주립대 경영대학 재무학과 조교수 '08 美 드폴대학 경영대학 재무학과 초 빙교수 '08~'13 美 시튼홀대학 경영대학 재무 학과 조교수 '13~(現)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국제학 과 교수 '20.10~(現)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및 언어교육원장 '20.03~(現) 미래에셋대우(주) 사외이사	'20.03~ (신규선임)

조윤제	1952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무역학 스탠퍼드대학교 대학 원 경제학 석사 스탠퍼드대학교 대학 원 경제학 박사	'84~'89, '92~'93 세계은행 선임경제분 석관 '89~'92 국제통화기금 경제분석관 '93~'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부장, 부 원장 '95~'97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자문관 '03~'05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05~'08 駐 영국 대사 '97~'17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7~'19 駐 미국 대사 '17~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20.03~'20.04 미래에셋대우(주) 사외이 사	'20.03~ '20.04 (신규선임 및 사임)
-----	------	---	--	-------------------------------------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조성일, 김성곤, 이점마, 조윤제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시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이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정용선 사외이사가 후보제안 하였으며, 정용선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시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이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조성일 사외이사가 후보제안하였습니다.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정용선 사외이사와 조성일 사외이사는 후보자 추천 당시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입니다. 상기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2020년 3월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하였으며, 상기 후보자들 중 재선임 후보자인 정용선, 조성일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후보제안자와 이사회 업무 등으로 교류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 정용선 사외이사와 조성일 사외이사는 각각 후보제안한 사외이사와 민법상의 친족관계가 없으며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가 소속된 당사 및 당사와의 계열회사와 거래관계 또한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조성일 후보자]

후보자는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험을 다수 보유한 금융업 전문가이자, 20 여년 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경영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경영전문가입니다. 다양한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험을 통하여 당사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2019년 이사회 및 위원회 100% 참석)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2020년 3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로 재선임 추천되었습니다.

[정용선 후보자]

후보자는 1982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감독원 감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금융업 전문가이자 재무, 회계 전문가입니다. 금융, 감독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2019년 이사회 및 위원회 100% 참석)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2020년 3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로 재선임 추천되었습니다.

[김성곤 후보자]

후보자는 다수의 신약 개발 경력이 있는 유기화학 박사이며, 현재 (주)종근당 신약연구소인 효종연구소장으로 재직중인 신성장 전문가입니다. 전문지식과 풍

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20년 3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이철편마 후보자]

후보자는 재무학 박사이며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로 재직중이 재무, 회계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20년 3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조윤제 후보자]

후보자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분석관 및 주 영국과 미국 대사를 역임한 글로벌 및 경제 전문가로서, 당사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20년 3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당사는 금융·경영·재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당사뿐 아니라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사내·외 인력 풀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전문가 후보군을 추천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2명의 기존 사외이사가 재선임 추천되었고, 3명의 신규 사외이사가 추천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 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소극적 요건	충족여부	충족 이유
지배구조법 제 5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지배구조법 제 6 조	충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 평가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 후보로 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당사는 금융회사 사외이사로서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다양한 분야로부터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행정 및 법률 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을 통하여 최종 추천하고 있습니다.

조성일 후보자는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험을 다수 보유한 금융업 전문가이자, 20여년 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경영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경영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용선 후보자는 26 여년간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국리츠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업 전문가이자 재무, 회계 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김성곤 후보자는 다수의 신약 개발 경력이 있는 유기화학 박사로서, 현재 (주)중근당 신약연구소인 효종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신성장 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젠펠마 후보자는 재무학 박사로서, 미국 시튼홀대학, 드폴대학, 알라바마주립대에서 재무학과 교수로 8 년간 종사하였고,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로서 재직 중 재무, 회계 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조운제 후보자는 경제학 석사 및 박사로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분석관 및 주 영국과 미국 대사를 역임하는 등 금융 및 경영 전문가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나) 독립성, 직무공정성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공정성을 자격요건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동법 제 10 조 임원의 겸직제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와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의사결정시 경영진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제 6 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있으며 최근 5 년간의 징계내역을 확인하여 증빙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윤리성 · 책임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라) 충실성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 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당사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곤란한 지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충실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4) 본인 소명

당사는 '20년 3월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선임된 사외이사에 대해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 징계내역 및 재직증빙 서류,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하여 본인 소명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조성일, 정용선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재선임 및 김성곤, 이젠펠, 조윤제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신규선임을 위해 ‘20 년 3 월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후보자들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상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은 재적위원 4 명 중 4 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임원후보추천위원 중 본인 추천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의결권이 없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20 년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4 명이며, 이 중 2 명의 사외이사가 연임되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재선임을 위해 “지배구조법”에 의거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당사 사규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른 소극적·적극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하며, 사외이사 재직 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참석률(75% 이상 여부) 등을 통하여 이사회 활동의 충실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재선임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에 높은 참석률을 보였으며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통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재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시 반영되었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직전사업연도 이사회 등 참석률	평가 여부
황건호	3 년 10 개월	X	100%	실시
김병일	3 년 11 개월	X	100%	실시
정용선	8 개월	○	100%	실시
조성일	8 개월	○	100%	실시

※ 재임기간은 2019 년말 기준임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미래에셋대우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내부규범을 통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에 추가하였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미래에셋대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회사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자 하며, 그 후보군에 대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및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서 충실성·전문성·윤리성·책임성·공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주주 및 임원 등 내외부의 경로를 통해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 (1) 제52기 제1차 이사회 : 2020년 1월 16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20년 1월 1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0년 그룹 위험한도 설정 (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그룹위험관리본부 업무 및 계획 보고					

(2) 제 52 기 제 2 차 이사회 : 2020 년 1 월 30 일(오전 10 시 30 분)

[안건통지일 : 2020년 1월 2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제5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년 장기성과보수 지급률확정 및 지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자기주식 처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2019년 단기성과보수 지급 보고					
나. 2019년 감사결과 보고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맵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하나대체투자미국발전소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5-1호” 수익증권을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3) 제 52 기 제 3 차 이사회 : 2020 년 2 월 20 일(오전 10 시)

[안건통지일 : 2020년 2월 1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주요주주와의 거래(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2019년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 및 점검 결과 보고					
나. 2019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활동 보고					
다. 2019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실적 보고					
라.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결과 보고					
마.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제출 보고					
바. 미래에셋벤처투자(주) 경영성과 및 경영계획 보고					

- 1)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주식 위탁수수료 취득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기 보유중인 “대조피에프브이(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주요주주(계열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바, 상법 제398조 및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기 보유중인 Bleriot US Bidco Inc. 에 대한 대출채권을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멀티에셋GlobalPrivateDeb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0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4)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멀티에셋GlobalPrivateDeb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0호”를 총액인수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4) 제 52 기 제 4 차 이사회 : 2020 년 3 월 2 일(오후 3 시 30 분)

[안건통지일 : 2020년 2월 2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제5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상정의안 결의(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제5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제51기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1) 2019년 제12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과 연수 및 숙박시설 지분 매매거래에 따른 양수가액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5) 제 52 기 제 5 차 이사회 : 2020 년 3 월 20 일(오전 10 시)

[안건통지일 : 2020년 3월 1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1. 이사 성명	황건호	김병일	정용선	조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자기주식 취득(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자기주식 취득 후 이익소각(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6) 제52기 제6차 이사회 : 2020년 3월 25일(오전 11시)

[안건통지일 : 2020년 3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운제	정용선	조성일	김성근	이젼마	
1. 이사 성명	조운제	정용선	조성일	김성근	이젼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이사회 의장 선임(案)	의결권 없음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대표이사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사내이사 처우(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무보증사채 발행(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0년 3월 25일 황건호, 김병일 사외이사 임기만료 퇴임.

2020년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조운제, 김성근, 이젼마 사외이사 신규 선임

- 1)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이사회규정 제8조에 의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2)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주식 위탁수수료 취득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맵스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 투자신탁7호”를 총액인수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4) 2019년 19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미래에셋” 브랜드 사용료율을 정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7) 제52기 제7차 이사회 : 2020년 3월 30일(오후 3시)

[안건통지일 : 2020년 3월 2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운제	정용선	조성일	김성근	이철편	
1. 이사 성명	조운제	정용선	조성일	김성근	이철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8) 제52기 제8차 이사회 : 2020년 4월 17일(오후 5시)

[안건통지일 : 2020년 4월 1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성일	정용선	조운제	김성근	이철편	
1. 이사 성명	조성일	정용선	조운제	김성근	이철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이사회 의장 선임(案)	의결권 없음 ¹⁾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나. 제51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개 최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기준 일 지정(案)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다. 준법감시인 임면(案)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라. 준법감시인 선임(案)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마. 2020년 상장지수증권 발행한도 증액 승인 및 일괄신고서 제출 (案)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 2020년 4월 17일 조운제 사외이사 사임 (사임일 : 2020년 4월 17일, 사임 등기일: 2020년 6월 5일)

1)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이사회규정 제8조에 의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9) 제52기 제9차 이사회 : 2020년 4월 23일(오전 9시 30분)

[안건통지일 : 2020년 4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성일	정용선	조운제	김성근	이철평	
1. 이사 성명	조성일	정용선	조운제	김성근	이철평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제52기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상정의안 결의(案)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의결권 없음 ¹⁾	가결
나. 미국 내 LA법인 IB기능 뉴욕 으로 통합(案)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다. 주요주주와의 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⁴⁾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나. 미래에셋 금융그룹 현황 보고('19.4Q)						
다. 그룹 공동투자 모니터링('19.4Q)						
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기본방향 보고						

※ 2020년 4월 17일 조운제 사외이사 사임 (사임일 : 2020년 4월 17일, 사임 등기일: 2020년 6월 5일)

- 1) 안건의 이해관계자로서 이사회규정 제8조에 의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2)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그룹웨어 업무운영 도급계약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기 보유중인 현대상선 23K 컨테이너선 6척 신조 선박금융 선순위 대출약정을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멀티에셋HMM초대형선박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4) 여수 경도 지구 내 부지 개발 사업 관련 지알디벨롭먼트(주)에 대출을 제공하면서 계열회사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10) 제52기 제10차 이사회 : 2020년 5월 8일(오전 8시)

[안건통지일 : 2020년 5월 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성일	정용선	조운제	김성근	이철태	
1. 이사 성명	조성일	정용선	조운제	김성근	이철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2020년 주주환원정책(案)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나. 장기성과보수 이연 기준개정(案)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Strategic Hotels & Resorts Portfolio 투자 관련 소송 등 주요 이슈 발생 사항 보고						

※ 2020년 4월 17일 조운제 사외이사 사임 (사임일 : 2020년 4월 17일, 사임 등기일: 2020년 6월 5일)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프린티어미국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제7호”에 추가출자를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11) 제52기 제11차 이사회 : 2020년 5월 28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20년 5월 2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성일	정용선	조운제	김성근	이철편	
1. 이사 성명	조성일	정용선	조운제	김성근	이철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2020년 상장지수증권 발행한도 증액 승인 및 일괄신고서 제출(案)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나. 주요주주와의 거래(案) ¹⁾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⁴⁾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⁵⁾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⁶⁾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결과 보고						

※ 2020년 4월 17일 조운제 사외이사 사임 (사임일 : 2020년 4월 17일, 사임 등기일: 2020년 6월 5일)

- 1) 주요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주식 위탁수수료 취득 거래를 하고자 하는 바, 당사와 주요주주 간에 거래를 위해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당사가 보유중인 지알디벨롭먼트(주)에 대한 대출채권 중 일부를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양도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스마트Q헤지포커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4)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산관리회사로 있는 “미래에셋맵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에 총액인수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5)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9-1호”의 환헛지 정산대금융 추가출자를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6) 기 투자중인 “미래에셋맵스인디아프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의 신탁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12) 제 52 기 제 12 차 이사회 : 2020년 6월 5일(오전 9시 30분)

[안건통지일 : 2020년 6월 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편	
1. 이사 성명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자기주식 취득(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0년 4월 17일 조윤제 사외이사 사임 (사임일 : 2020년 4월 17일, 사임 등기일: 2020년 6월 5일)

(13) 제52기 제13차 이사회 : 2020년 6월 25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20년 6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편	
1. 이사 성명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2020년 상장지수증권 발행한도 증액 승인 및 일괄신고서 제출(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멀티에셋해외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호”의 환헛지 정산대금용 추가출자를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스마트Q아시아헤지포커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14) 제52기 제14차 이사회 : 2020년 7월 30일(오전 9시 30분)

[안건통지일 : 2020년 7월 2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평	
1. 이사 성명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평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자기주식 취득(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네이버(주)와의 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한 변경계약 체결(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그룹위험관리규정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홍콩 현지법인 증자(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수용의 건(案)	보류				
4. 보고 안건					
가. 해외부동산 투자현황 부문감사결과 보고					
나.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다. 미래에셋 금융그룹 현황 보고('20.1Q)					
라. 그룹 공동투자 모니터링('20.1Q)					
마. 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결과 및 대응 계획					

1) 계열회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멀티에셋해외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1호”의 환헛지 정산대금융 추가출자를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15) 제52기 제15차 이사회 : 2020년 8월 27일(오후 6시 30분)

[안건통지일 : 2020년 8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편	
1. 이사 성명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수용의 건(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결과 보고					

- 1) 기 투자중인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브라질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의 신탁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16) 제52기 제16차 이사회 : 2020년 9월 24일(오전 10시 30분)

[안건통지일 : 2020년 9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편	
1. 이사 성명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그룹내부통제 관련 사규 제·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그룹내부통제협의회 구성(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해외대체투자 및 재매각현황 부문감사 결과 보고					

- 1) 기 보유중인 HMM 23K 컨테이너선 6척 선조 선박금융 선순위 대출채권을 주요주주(계열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바, 상법 제398조 및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OCIO금리솔루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를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고객 요청에 따라 편입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17) 제52기 제17차 이사회 : 2020년 10월 29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20년 10월 2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평	
1. 이사 성명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평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자기주식 취득(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주주간약정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그룹내부통제협의회에 관한 보고					
나.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다. 미래에셋 금융그룹 현황 보고('20.2Q)					
라. 그룹 공동투자 모니터링('20.2Q)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OCIO연금솔루션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를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고객 요청에 따라 편입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미래에셋 Innovative Growth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신탁재산을 출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미래에셋 Innovative Growth 투자조합”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고유재산을 출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18) 제52기 제18차 이사회 : 2020년 11월 13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20년 11월 1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프린티어미국사모부동산투자
신탁6-2호”에 추가출자를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
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19) 제52기 제19차 이사회 : 2020년 11월 26일(오전 10시)

[안건통지일 : 2020년 11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평	
1. 이사 성명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평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2021년 파생결합사채·증권,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지수증권 발행예정금액 승인 및 일괄신고서의 제출(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그룹 이해상충 관리규정 제정(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그룹 내부통제 업무수행 세부지침 보고					
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결과 보고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7-1호, 17-2호”에 투자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호”에 추가출자를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기 투자중인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미국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의 신탁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수익자 총회 의결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20) 제52기 제20차 이사회 : 2020년 12월 23일(오전 11시)

[안건통지일 : 2020년 12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편	
1. 이사 성명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 안건					
가.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정정 승인(案)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승인(案)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 안건					
가. 2020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나. 2020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 보고					
다.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점검 결과 보고					
라.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20.3Q)					
마.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바. 미래에셋 금융그룹 현황('20.3Q)					
사. 그룹 공동투자 모니터링('20.3Q)					

- 1)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미국부동산투자신탁 4호”에 추가출자를 약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2) 2020년 13차 이사회에서 승인 득한 “미래에셋스마트Q아시아헤지포커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1호”의 투자금액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3)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인 “미래에셋스마트Q아비트리지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를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고객 요청에 따라 편입하고자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동시행령 제17조의8)에 의거 이사회 사전 승인함.

※ 사외이사의 반대(보류 포함) 의견 내역

- 제52기 제14차 이사회 : 2020년 7월 30일

안건명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이철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수용의 건(案)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보류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제 52 기 제 1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0 년 3 월 2 일(오후 2 시)

[안건통지일 : 2020년 2월 2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정용선	김병일	조성일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案) 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추천(案) ²⁾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대표이사 후보 추천(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 중 정용선, 조성일 사외이사 추천 안건에 대해서 당사자는 의결 미실시함.
- 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추천 안건 중 정용선, 조성일 사외이사 추천 안건에 대해서 당사자는 의결 미실시함.

－ 제 52 기 제 2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0 년 4 월 23 일(오전 9 시)

[안건통지일 : 2020년 4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정용선	김성곤	이젠펠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의결안건				
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 추천(案)	찬성	찬성	의결권 없음 ¹⁾	가결

- 1) 본 안건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로 이젠펠 사외이사가 추천되어, 당사자는 의결 미실시함

다) 감사위원회

- 제 52 기 제 1 차 감사위원회 : 2020.1.30(목) 개최

[안전 통지일 : 2020. 1. 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전				
가. 1호안전 2020감사계획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보고안전

- 2019년 감사결과 보고
- 2019년 준법감시인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준법감시인 업무 추진 계획 보고
- 외환거래법 관련 부문검사 결과 보고
- 조치양정 세부기준 개정(안) 보고
- 외부감사계약 체결 현황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지침] 개정(안) 보고

- 제 52 기 제 2 차 감사위원회 : 2020.3.2(월) 개최

[안건 통지일 : 2020. 2. 2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1)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검토(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채택(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채택(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FY2019 결산감사 보고 및 감사보고서 채택(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 결과 추인(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보고안건

- 제51기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보고
- 제5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자금세탁방지 관련 부문검사 조치결과 보고

- 제 52기 제 3 차 감사위원회 : 2020. 3. 25 (수) 개최

[안건 통지일 : 2020. 3.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용선	조운제 ¹⁾	조성일 ¹⁾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안)	- ²⁾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 1) 김병일 감사위원, 황건호 감사위원의 사임으로 인해 조운제 사외이사와 조성일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
- 2) 정용선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 불가

- 제 52기 제 4 차 감사위원회 : 2020. 4. 23 (목) 개최

[안건 통지일 : 2020. 4. 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용선	조운제	조성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임시주주총회 의안 검토(案)	찬성	-	찬성	가결

- 제 52기 제 5 차 감사위원회 : 2020. 6. 25 (목) 개최

[안건 통지일 : 2020. 6.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용선	조성일	이젼마 ¹⁾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²⁾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조운제 감사위원의 사임으로 인해 이젼마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
- 2) 보고안건
 - 전기 감사인 감사계약 이행결과 보고
 - 제52기 1분기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보고
 - 제52기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보고

- 제 52기 제 6 차 감사위원회 : 2020. 7. 30 (목) 개최

[안건 통지일 : 2020. 7. 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용선	조성일	이젼마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보고안건
 - 해외부동산 투자현황 부문 감사결과 보고
 - FY2020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보고

- 제52기 제7차 감사위원회 : 2020. 9. 24 (목) 개최

[안건 통지일 : 2020. 9. 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용선	조성일	이젠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보고안건

- 제5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보고
- 제52기 반기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및 핵심감사항목의 선정 보고
- 제5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검토결과 보고
- 해외대체투자 및 재매각 현황 부문 감사결과 보고

- 제 52 기 제 8 차 감사위원회 : 2020. 11. 26 (목) 개최

[안건 통지일 : 2020. 11. 2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용선	조성일	이젠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감사결과 직원 조치 요구(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업무인계인수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보고안건

- 제 52 기 3 분기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 제 52기 제 9 차 감사위원회 : 2020. 12. 23 (수) 개최

[안전 통지일 : 2020. 12. 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용선	조성일	이젼마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보고안전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2020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2020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위험관리위원회

- 제 52 기 제 1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01.16 오전 09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20.01.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2020년 1분기 위험액(VaR) 한도 설정(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신용공여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⁴⁾ 우발채무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가결
라. 4 호안건 ⁵⁾ 부동산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건전성 비율 및 전사한도 사용 현황 총 1 건 보고
- 2) 재무건전성 유지와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위험액(VaR) 한도 배분
- 3) 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변경
- 4) 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우발채무 한도 재배분
- 5) 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부동산 한도 재배분

- 제 52 기 제 2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01.30 오전 08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20.01.2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조직변경에 따른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신규 구성

- 제 52 기 제 3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02.20 오전 09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20.02.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¹⁾ 쌍용양회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주선 및 참여의 건 (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쌍용양회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주선 및 참여'관련 투자 승인 요청

- 제 52 기 제 4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04.23 오전 10 시 45 분

[안전 통지일 : 2020.04.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이재마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동일거래상대방 전사한도 변경 (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우발채무 한도 中 CDS 보장매도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가결
나. 3 호안건 ⁴⁾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국민은행 동일거래상대방 임시한도 설정 등 총 5 건
- 2) 3 대 시중은행 전사한도 변경
- 3) 기 부여한 한도 대비 사용률이 낮아, CDS 보장매도 한도 축소
- 4) 인사발령에 따른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 제 52 기 제 5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09.24 오전 10 시

[안전 통지일 : 2020.09.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이젠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	-	-
4. 의결안전			
가. 1 호안전 ²⁾ 조기경보체계 개편(案)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전 ³⁾ 위험관리일반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전 ⁴⁾ 신용공여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유동성리스크 관리현황 총 1 건
- 2) 비상계획 정기점검, 그룹 조기경보체계 시범운영 및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편, 단기금융업무 인가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지표 신설
- 3) [조기경보체계] 개편에 따른 규정 변경
- 4) 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변경

– 제 52 기 제 6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12.23 오전 10 시 30 분

[안전 통지일 : 2020.12.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이젠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¹⁾	-	-	-
4. 의결안전	의결안전 없음		

비고

- 1) 위험관리운영위원회 및 투자심사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등 총 2 건

마) 보수위원회

- 제 52 기 제 1 차 보수위원회 : 2020 년 1 월 30 일 (오전 9 시)

[안건통지일 : 2020년 1월 23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황건호	김병일	조성일	
1. 위원 성명	황건호	김병일	조성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2019 년 단기성과보수 지급(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 년 장기성과보수 지급률 심의(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52 기 제 2 차 보수위원회 : 2020 년 2 월 20 일 (오전 9 시)

[안건통지일 : 2020년 2월 18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황건호	김병일	조성일	
1. 위원 성명	황건호	김병일	조성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52 기 제 3 차 보수위원회 : 2020 년 5 월 8 일 (오전 9 시)

[안건통지일 : 2020년 5월 7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1. 위원 성명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2020 년 단기성과보수 지급(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황건호

황건호 사외이사는 '20년 임기 중 개최된 이사회 5회 중 5회, 감사위원회 2회, 보수위원회 2회, 위험관리위원회 3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황건호 사외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 안건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에 대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년 중 총 24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김병일

김병일 사외이사는 '20년 임기 중 개최된 이사회 5회 중 5회, 감사위원회 2회, 보수위원회 2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김병일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내부통제 등 주요이슈 등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년 중 총 2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조성일

조성일 사외이사는 '20년에 개최된 이사회 20회 중 20회, 감사위원회 7회, 위험관리위원회 6회, 보수위원회 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 안건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위험관리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회사의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을 위한 총괄적인 감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년 중 총 74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정용선

정용선 사외이사는 '20 년에 개최된 이사회 20 회 중 20 회, 감사위원회 9 회, 보수위원회 1 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정용선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내부통제 등 주요이슈 등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 년 중 총 64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마) 사외이사 김성곤

김성곤 사외이사는 '20 년 임기 중 개최된 이사회 15 회 중 15 회, 보수위원회 1 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김성곤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 년 중 총 34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바) 사외이사 이젠펠마

이젠펠마 사외이사는 '20 년 임기 중 개최된 이사회 15 회 중 15 회, 감사위원회 5 회, 위험관리위원회 3 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젠펠마 사외이사는 감사위원으로서 내부통제 등 주요이슈 등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 년 중 총 48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 사외이사 조운제

조운제 사외이사는 '20 년 임기 중 개최된 이사회 6 회 중 2 회, 감사위원회 2 회 중 1 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조운제 사외이사는 감사위원으로서 내부통제 등 주요이슈 등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증 및 조언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년 중 총 6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아) 요약

구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시간
			감사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보수 위원회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황건호	5	5	2	2	3	3	2	2	-	-	24
김병일	5	5	2	2	-	-	2	2	1	1	20
조성일	20	20	7	7	6	6	3	3	1	1	74
정용선	20	20	9	9	-	-	1	1	2	2	64
김성곤	15	15	-	-	-	-	1	1	1	1	34
이젬마	15	15	5	5	3	3	-	-	1	1	48
조운제	6	2	2	1	-	-	-	-	-	-	6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피보험자 : 미래에셋대우(자회사 포함) 소속 임원 (등기이사 등)
- 보상한도 : 500억 (청구당, 총보상한도)
- 보험료 : 169,100,000원
- 자기부담금(담보1/담보2) : 없음
- 가입기간 : 2019년 12월 30일(00:01) ~ 2020년 12월 30일(00:00)

- 피보험자 : 미래에셋대우(자회사 포함) 소속 임원 (등기이사 등)
- 보상한도 : 500억 (청구당, 총보상한도)
- 보험료 : 169,100,000원
- 자기부담금(담보1/담보2) : 없음
- 가입기간 : 2020년 12월 30일(00:01) ~ 2021년 12월 30일(00:00)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였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의 ‘제 4 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로 내규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 회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수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외부 전문인력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 년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시	교육주체	참석 사외이사	교육내용
2020 년 1 월 16 일	내부교육	황건호, 김병일, 조성일, 정용선	2020 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조성일

가) 소극적 자격요건

조성일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조성일 사외이사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 등에 따른 사외이사의 전문성 자격요건 및 전문성, 독립성·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나. 지배구조법 제6조		
2. 적극적 자격요건	-	-
가. 전문성	충족	경영분야 전문성을 갖추
나. 독립성, 직무공정성	충족	임원선임 심사, 자격요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요건 충족을 확인함
다. 윤리책임성	충족	
라. 충실성	충족	

2) 사외이사 정용선

가) 소극적 자격요건

정용선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정용선 사외이사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 등에 따른 사외이사의 전문성 자격요건 및 전문성, 독립성·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나. 지배구조법 제6조		
2. 적극적 자격요건	-	-
가. 전문성	충족	임원선임 심사, 자격요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요건 충족을 확인함
나. 독립성, 직무공정성	충족	
다. 윤리책임성	충족	
라. 충실성	충족	

3) 사외이사 김성곤

가) 소극적 자격요건

김성곤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김성곤 사외이사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 등에 따른 사외이사의 전문성 자격요건 및 전문성, 독립성·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나. 지배구조법 제6조		
2. 적극적 자격요건	-	-
가. 전문성	충족	신성장 분야 전문성을 갖춘
나. 독립성, 직무공정성	충족	임원선임 심사, 자격요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요건 충족을 확인함
다. 윤리책임성	충족	
라. 충실성	충족	

4) 사외이사 이젠큡마

가) 소극적 자격요건

이젠큡마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제 6 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이젠큡마 사외이사는 당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5 조 등에 따른 사외이사의 전문성 자격요건 및 전문성, 독립성·직무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선임 후 동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가. 지배구조법 제5조		
나. 지배구조법 제6조		
2. 적극적 자격요건	-	-
가. 전문성	충족	임원선임 심사, 자격요건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요건 충족을 확인함
나. 독립성, 직무공정성	충족	
다. 윤리책임성	충족	
라. 충실성	충족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사외이사 평가에 관한 지침을 동 사규 제13조 및 제29조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는 보수의 지급과 재선임 결정 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외이사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되,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매년 초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사외이사의 보수 지급과 선임 결정에 활용하고 있

습니다.

이에 2021년 1월에 실시한 2020년 사외이사 평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사외이사의 역량, 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이사회 참여도 평가, 자기 평가, 사외이사 간 평가 등의 내부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 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회계연도 종료 후 매년 1 회 이사회 참여도 평가, 자기 평가, 사외이사 간 평가에 의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평가 기준 : 사외이사 평가는 이사회 참여도 평가(40%), 자기 평가(40%), 사외이사 간 평가(20%)로 구성됩니다.

이사회 참여도 평가는 사외이사별로 이사회 및 위원회 참여도(충실성)와 기타 기여사항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 집니다.

자기 평가와 사외이사 간 평가의 평가기준(항목)은 사외이사별로 기본역할(주주 가치 향상 및 장기적 기업가치 개선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외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전문성(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이해도(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한 준비와 이해는 충실한지 여부 등), 윤리성·책임성(기업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공정성(의사결정시 경영진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③ 평가 절차 : 이사회 참여도 평가는 이사회이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임직원
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하며, 자기 평가 및 사외이사 간 평가
는 사외이사별로 작성한 평가서를 통해 평가에 반영합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 총론

2021년 1월 미래에셋대우는 사외이사에 대해서 이사회 참여도 평가, 자기 평가,
사외이사 간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평가결과 4명의 사외이사 모두 임기 중 이
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100%로 우수한 참여도(충실성)를 보였으며, 주주가치 향
상 및 장기적 기업가치 개선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
하고, 합리적 의사결정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외이사
로서의 기본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성, 이해도, 윤리
성·책임성, 공정성의 관점에서 모든 사외이사가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
로 평가되었습니다.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 이사	평가결과							개선 방안
	충실성 (참석률)	기본 역할	활동평가				기타	
			전문성	이해도	윤리성· 책임성	공정성		
조성일	우수 (100%)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	-
정용선	우수 (100%)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	-
김성곤	우수 (100%)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	-
이철편	우수 (100%)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	-

3) 외부평가

“지배구조법”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사외이사 외부평가에 관한 지침을 동 사규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외이사 평가 기준을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가) 외부평가 개요

사외이사 외부평가는 향후 적절한 외부평가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이후,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위탁 검토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미래에셋대우는 평가주체·기준·방법 등의 객관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 내역

- 사외이사 지원부서 설치현황 (보고서 제출일 기준)

부서명	경영관리팀
인원 구성	담당임원 2명, 팀장 1명, 팀원 13명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및 위원회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실무지원-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자료 등 회의자료의 구비 및 관리- 이사회 및 위원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검증 등 관리업무 지원-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영정보 제공 등 제반 실무지원- 사외이사 평가업무 지원 및 사외이사 연수 실시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조성일

가) 재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8,766,666	기본금 + 기타 수당
	기본금	56,466,666	월 500 만원 (2020.03.25 ~ 12.31) 월 400 만원 (2020.01.01 ~ 03.24)
	상여금	-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기타 수당	12,300,000	회의참석수당 50 만원 건강검진비(배우자) 150 만원 명절선물 15 만원 창립기념일선물 50 만원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1,500,000	건강검진비(본인) 150 만원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	-
		-	-

2) 사외이사 정용선

가) 재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0,225,000	기본금 + 기타 수당
기본금	48,000,000	월 400 만원
상여금	-	-
기타 수당	12,225,000	회의참석수당 50 만원 건강검진비(배우자)143 만원 명절선물 15 만원 창립기념일선물 50 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1,373,000	건강검진비(본인) 137 만원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1,373,000	건강검진비(본인) 137 만원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3) 사외이사 이철편

가) 재직기간 : 2020. 3. 25 ~ 2020. 12. 31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19,250,000	기본금 + 기타 수당
기본금	11,600,000	월 400 만원
상여금	-	-
기타 수당	7,650,000	회의참석수당 50 만원 명절선물 15 만원 창립기념일선물 50 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1,500,000	건강검진비(본인) 150 만원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1,500,000	건강검진비(본인) 150 만원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4) 사외이사 김성곤

가) 재직기간 : 2020. 3. 25 ~ 2020. 12. 31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6,083,333	기본금 + 기타 수당
	기본금	36,933,333	월 400 만원
	상여금		
	기타 수당	9,150,000	회의참석수당 50 만원 건강검진비(배우자)150 만원 명절선물 15 만원 창립기념일선물 50 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1,000,000	건강검진비(본인) 100 만원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1,000,000	건강검진비(본인) 100 만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5) 사외이사 황건호

가) 재직기간 : 2020. 1. 01 ~ 2020. 3. 25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20,722,566	기본금 + 기타 수당
	기본금	14,166,666	월 500 만원
	상여금		
	기타 수당	6,555,900	회의참석수당 50 만원 기타과세소득 290 만원 명절선물 15 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6) 사외이사 김병일

가) 재직기간 : 2020. 1. 01 ~ 2020. 3. 25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16,489,233	기본금 + 기타 수당
	기본금	13,333,333	월 400 만원
	상여금		
	기타 수당	5,155,900	회의참석수당 50 만원 기타과세소득 150 만원 명절선물 15 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7) 사외이사 조윤제

가) 재직기간 : 2020. 3. 25 ~ 2020. 4. 17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615,899	기본금 + 기타 수당
	기본금	3,999,999	월 500 만원
	상여금		
	기타 수당	2,615,900	회의참석수당 50 만원 기타과세소득 162 만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자. 최근 5 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홍성일	'16.12.30	제49기 정기 주총일 (18.03)	16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6.12 월~17.03 월) 위험관리위원회 (16.12 월~18.03 월) 감사위원회 (17.03 월~18.03 월) 보수위원회 (16.12 월~17.03 월)	위험관리위원장 (17.03 월~18.03 월)	(現)GK 파트너스 부회장(비상근) 대우증권 사외이사IBK 증권 사외이사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한국투자신탁 대표이사 신 공항고속도로 대표이사 삼성증권 리테일 영업총괄 부사장 삼성중공업 경영기획실장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감사팀장
정운택	'16.12.30	제49기 정기 주총일 (17.03.2 3 중도퇴 임)	3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6.12 월~17.3 월) 위험관리위원회 (16.12 월~17.3 월)	-	동성 코퍼레이션(주) 사외이사 재단법인 정이있는 장학재단 이사장 (주)효성 재무본부장(사장) 효성캐피탈(주) 대표이사 효성그룹 파이낸스 사장
권태균	'17.03.24	제51기 정기 주총일 (19.3.27 중도퇴임)	25 개월	위험관리위원회 (17.3 월~19.3 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7.03 월~19.3 월)	임원후보추천위원장 (17.03 월~18.03 월) 위험관리위원장 (18.03 월~19.3 월)	(現)법무법인 율촌 고문 (現)삼성전기(주) 사외이사 주 아랍에미리트(UAE) 대사 조달청장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금융 정보분석원장/경제자유구역기획 단장
박찬수	'18.03.27	제51기 정기 주총일 (19.3.27 중도퇴임)	13 개월	감사위원회 (18.3 월~19.3 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8.03 월~19.3 월)	임원후보추천위원장 (18.03 월~19.3 월)	(現) 파인스톤 대표 대신증권 사외이사 LIG 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 조사1 국 국장
황건호	'16.3.5	제51기 정기 주총일 (20.03)	48 개월	감사위원회 (16.5 월~20.3 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6.3 월~18.3 월) 보수위원회 (17.3 월~20.3 월) 감사위원회 (18.3 월~20.3 월)	임원후보추천위원장 (16.3 월~17.3 월) 보수위원장 (17.3 월~20.3 월) 이사회회장 (17.3 월~20.3 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CEO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메리츠증권(주) 대표이사(사장) 대우증권(주) 부사장
김병일	'16.2.5.	제51기 정기 주총일	49 개월	감사위원회 (16.2 월~20.3 월) 보수위원회	보수위원장 (16.2 월~17.3 월) 감사위원장	(現)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공교수 현대커머셜(주) 사외이사

		(20.03)		(16.2 월~20.3 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9.3 월~20.3 월) 위험관리위원회 (16.3 월~16.12 월)	(17.3 월~20.3 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주)대현 상임감사 재무부/재정경제부(원) 행정사무 관 및 서기관
조운제	'20.3.25	제 53 기 정기 주총일 (20.4.17 중도퇴임)	2 개 월	감사위원회 (20.3 월~20.4 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3 월~20.4 월)	이사회 의장 (20.3 월~20.4 월) 임원후보추천위원장 (20.3 월~20.4 월)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 수 駐 미국 대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駐 영국 대사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자문 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부장, 부원 장 국제통화기금 경제분석관 세계은행 선임경제분석관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조성일	'19.05.08	제 52 기 정기 주총일 (21.03)	20 개 월	위험관리위원회 (19.5 월~현재) 보수위원회 (19.5 월~현재) 감사위원회 (20.3 월~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9.5 월~20.3 월)	이사회 의장 (20.4 월~현재) 위험관리위원장 (19.5 월~현재) 보수위원장 (20.3 월~현재)	現)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부총장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멀티에셋자산운용(주) 사외이사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사외이사 DGB 자산운용(주) 사외이사 키움증권(주) 사외이사
정용선	'19.05.08	제 52 기 정기 주총일 (21.03)	20 개 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9.5 월~현재) 감사위원회 (19.5 월~현재)	감사위원장 (20.3 월~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장 (19.5 월~현재)	現) 금호석유화학(주) 사외이사 現) 한국리츠협회 및 에이치더블 유권설당 고문(비상근) 제 4 대 한국리츠협회 회장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사장 삼상자산운용(주) 사외이사 법무법인 화우 고문 금융감독원 증권시장담당 부원 장보
김성곤	'20.3.25	제 53 기 정기 주총일 (22.03)	10 개 월	보수위원회 (20.3 월~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3 월~현재)	-	現) (주)중근당 효종연구소장/신약 연구소장 (주)중근당 신약연구소장 (주)중근당 의약화학/공정 개발 담 당이사 Merck 선임연구원 KIST 위촉연구원

이젼마	'20.3.25	제 53 기 정기 주총일 (22.03)	10 개월	위험관리위원회 (20.3 월~현재) 감사위원회 (20.6 월~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3 월~현재)	-	現)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및 언어교육원장 現)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국제학 과 교수 美 시튼홀대학교 경영대학 재무 학과 교수 美 드폴대학 경영대학 재무학과 초빙교수 美 알라바미주립대 경영대학 재 무학과 조교수
-----	----------	--------------------------------	----------	--	---	--

※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은 2020 년 12 월 기준임.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미래에셋대우는 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경영공백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배구조법” 제 14 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와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지배구조 내부규범”)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와 심의·의결을 통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동 사규의 개정 권한을 이사회에 두어 그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며, 동 사규의 제·개정 시 이를 공시하여 지배구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사규 제 5 장에는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장에서 1)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2)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3) 최고경영자의 자격, 4)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5)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6)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제 5 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투자업의 공

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 선임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동 임원의 요건에 부합함을 본인 스스로 소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경영자의 소극적 자격요건 및 적극적 자격요건을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37 조에 정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최고경영자 선임에 있어 동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에셋대우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영승계 절차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또는 최고경영자의 중도사임의 경우와 회사가 속한 시장상황 및 경영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최고경영자의 퇴임 시에는 임기만료 전 30일 이전부터, 사임 시는 해당 사유 발생 즉시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에서 임원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는 바, 미래에셋대우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최고경영자의 역할 및 요구된 역량의 보유 수준을 평가하고 자격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될 경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방향, 각 후보의 강점 등과 관련하여 심층 면접 및 추가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기간 이내에 최종 후보자 중 최고경영자를 선발하되, 최종 후보자가 등기이사일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로 선임되고, 최종 후보자가 등기이사 아닐 경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2) 비상계획

미래에셋대우는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 제 34 조 제 2 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에 2016 년 12 월 30 일 개최한 제 20 차 이사회에서는 감사위원이 아닌 사내登記이사 중에서 직위, 위촉일(현 직위 위촉일을 말함), 연장자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 이사의 부재시 부문대표 중에서 상기와 동일한 순위로 해당 부문대표가 대표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사고, 건강상 사유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는 등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체없이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합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회사의 상무(常務)에 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선임을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선임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즉,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선정부터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및 이사회를 통한 최고경영자 선임까지 법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배구조법”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35 조에도 비상상황 경영승계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임원의 자격요건)

- 평가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일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대표이사인 최현만 수석 부회장은 2016년 11월 4일 개최한 제 16 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되었고, 조용기 부회장은 2017년 3월 24일 개최한 제 3 차 이사회 에서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현만 수석부회장과 조용기 부회장은 2020년 3월 25일 개최한 제 6 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로 재 선임되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인 최현만 대표이사와 조용기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 사 항 목	대표이사	
	최현만	조용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4 조제 2 항에 따른 행정처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p>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p>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 1호 또는 제 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 1호 또는 제 2호에서 정하는 기간</p>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던다면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3 항으로 정하는 사람</p> <p>-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 10 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②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미래에셋대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였고, 동 사규 제 37 조에서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 평가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일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대표이사인 최현만 수석 부회장과 조용기 부회장은 2020년 3월 25일 개최한 제 6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인 최현만 대표이사 및 조용기 대표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서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동 자격요건의 충족을 충실히 확인하였습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2016년 11월 4일 홍성국 전임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동일자에 최현만 現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됨으로써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대우는 2016년 11월 4일 제 48기 제 3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최현만 사내이사를 선임하였고, 동일자에 제 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제 1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현만 대표이사 후보자의 역량 및 자격요건 검증 결

과를 바탕으로 후보자 추천 및 대표이사로 선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조용기 대표이사는 2017년 3월 24일 제 48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7년 3월 3일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2017년 3월 24일 제 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용기 대표이사 후보자의 역량 및 자격요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 추천 및 대표이사로 선임 결의하였습니다.

최현만, 조용기 대표이사는 2018년 3월 27일 제 49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었고, 최현만, 조용기 대표이사 후보자의 역량 및 자격요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3월 6일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후, 2018년 3월 27일 제 7차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재선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최현만, 조용기 대표이사는 2019년 3월 27일 제 50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었고, 최현만, 조용기 대표이사 후보자의 역량 및 자격요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2월 27일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후, 2019년 3월 27일 제 5차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재선임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최현만, 조용기 대표이사는 2020년 3월 25일 제 51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었고, 최현만, 조용기 대표이사 후보자의 역량 및 자격요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3월 2일 제 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후, 2020년 3월 25일 제 6차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재선임 결의하였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최현만 대표이사]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에서 최현만 대표이사 후보자는 다년간의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종사 경력으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고, 금융 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로서 회사가 정한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에셋대우 및 미래에셋그룹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여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로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역량과 자질이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최현만 대표이사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조웅기 대표이사]

조웅기 대표이사 후보자는 다년간 미래에셋대우의 경영진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금융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통해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 왔으며, 폭넓은 시각으로 미래에셋대우가 국내 최고의 금융투자회사로 발전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다년간 훌륭한 성과로 전문성을 검증 받은 조웅기 대표이사 후보자는 미래에셋대우의 최고경영자로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역량과 자질이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웅기 대표이사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및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지배구조법”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2016년 10월 25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에 관한 지침을 동사규 제 38조와 제 3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내부 후보군은 회사와 계열회사의 최고경영자, 핵심포지션 담당임원 중에서 선발하며, 외부 후보군은 금융산업 경력 보유자로서 관련 법률 및 사규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에 관한 업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관으로 합니다.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발굴 및 자격검증 등 아래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에 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 i) 주주, 사내 추천, 기관투자자, 외부 자문기관 등의 추천을 활용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및 발굴
- ii) 예비후보군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요건 검증
- iii) 회사 최고경영자 및 외부 자문기관 의견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예비 후보군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최종 후보군을 승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위 검증 과정에서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속한 자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이 회사와 거래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3) 후보군 현황

본 연차보고서 공시대상 기간인 2020 사업연도 중에 후보군을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후보군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지배구조법”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지침을 동 사규 제 33 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이사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승계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 사규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최고경영자 연임 또는 변경 등의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게 2020년 3월 25일 제 6 차 이사회에서 최현만, 조용기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지배구조법”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하여, 경영승계 지원부서에 관한 지침을 동 사규 제 36 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원 담당부서로 하고, 동 부서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i)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 ii)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iii)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이에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미래에셋대우의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보고서 제출일 기준)

- 부서명 : 경영관리팀
- 인원 구성 : 담당임원 2명, 팀장 1명, 팀원 13명
- 지정사유 : 미래에셋대우 경영관리팀은 지배구조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으므로, 최고경영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이고 담당 인력 및 업무수행 경험 등이 충분함.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이 검증된 3 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 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경영분야 전문가, 회계·재무분야 전문가 및 감독·검사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할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 총회에서 선임 및 해임되고, 이사회 및 집행기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전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정의한 일상감사 및 사후공람을 상근 감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부의안전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 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상근감사위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보조조직의 장이 이를 대행하여 소집된 이사회 부의안건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부의안건 등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412)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402)

이에 따라 '20년 3월에 소집된 2020년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는'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업무보고를 요구해 이에 재무실장이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으며, FY2019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20년 3월 감사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통해 회사의 경영, 재무 및 업무 주요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 및 의견제시 등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해 감독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 매 감사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독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외감법§10)

감사위원회는 2019년 11월 제11차 감사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삼일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계약 체결을 의결하여,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기말까지 삼일회계법인을 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2020년 6월 제5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연간 감사계획을 보고 받는 등, 분기별로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서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외부감사 진행상황과 주요 회계 이슈 및 표준감사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사항을 감독·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상근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정의한 일상감사 및 사후공람과 감사실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확인 등 감사보조조직 업무통할에 관한 권한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상근감사위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된 사항 및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정한 상근감사위원의 직무 등에 대해 위원회의 결의로 감사보조조직의 장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정기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감사보조조직의 장은 매 연말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초 최초로 실시하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받고 있으며, 이후 개최되는 정기 및 임시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 결과(종합감사 및 부문감사 등) 추인, 일상감사 주요사항 보고, 감독기관 수검 결과보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사항 및 위원회의 주문 사항을 정리하여 수시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2020 년 중에는 '20 년 1 월에 소집된 감사위원회에서 '2020 년 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6 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 1 주 전까지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법§447 의 3, 542 의 12)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받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대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2020년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 외 제7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핵심감사 사항 및 반기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더불어 이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해 검토 및 확인을 하였으며, 2020년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에 2020년 제2차 감사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받은 후, 동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연간 검사계획 및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18)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0년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2020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준법감시인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 1회 보고 받았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상법§415의 2),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상법 §542 의 11, 동법 시행령 §37 의 2)

또한 상근감사위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되지 못하며(상법§542의 8), 이외에도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 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될 수 없습니다.(상법 §542 의 10)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회 위원 3 인 모두 감사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정용선 위원장은 1982 년부터 2008 년까지 증권감독원을 거쳐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상법 제 542 조의 11 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점마 위원은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근무하였고,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국제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상법 제 542 조의 11 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조운제 감사위원의 사임에 따라 제 52 기 임시 주주총회(2020. 6. 3)에서 이철편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 인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정용선	(現)사외	위원장	'19. 5. 8	'21. 3. 24
조성일	(現)사외	위원	'20. 3. 25	'21. 3. 24
이철편	(現)사외	위원	'20. 6. 3	'21. 3. 24

* 최초 선임일 기준임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년 총 9회의 감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감사위원의 참석율은 96%로 실질적이고 원활한 감사위원회 운영이 가능 했습니다.

- 제 52 기 제 1 차 감사위원회 : 2020.1.30(목) 개최

[안전 통지일 : 2020. 2. 2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전				
가. 1호안전 2020감사계획 수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보고안전

- 2019년 감사결과 보고
- 2019년 준법감시인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준법감시인 업무 추진 계획 보고
- 외환거래법 관련 부문검사 결과 보고
- 조치양정 세부기준 개정(안) 보고
- 외부감사계약 체결 현황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지침] 개정(안) 보고

- 제 52기 제 2 차 감사위원회 : 2020.3.2(월) 개최

[안전 통지일 : 2020.2.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병일	황건호	정용선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 1')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검토(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채택(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채택(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FY2019 결산감사 보고 및 감사보고서 채택(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5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 결과 추인(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1) 보고안전

- 제51기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보고
- 제5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자금세탁방지 관련 부문검사 조치결과 보고

- 제 52기 제 3 차 감사위원회 : 2020. 3. 25 (수) 개최

[안건 통지일 : 2020. 3.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용선	조운제 ¹⁾	조성일 ¹⁾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안)	- ²⁾	찬성	찬성	가결

※ 비고

- 1) 김병일 감사위원, 황건호 감사위원의 사임으로 인해 조운제 사외이사와 조성일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
- 2) 정용선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 불가

- 제 52기 제 4 차 감사위원회 : 2020. 4. 23 (목) 개최

[안건 통지일 : 2020. 4. 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용선	조운제	조성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임시주주총회 의안 검토(案)	찬성	-	찬성	가결

- 제 52기 제 5 차 감사위원회 : 2020. 6. 25 (수) 개최

[안건 통지일 : 2020. 6.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용선	조성일	이젼마 ¹⁾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²⁾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조운제 감사위원의 사임으로 인해 이젼마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
- 2) 보고안건
 - 전기 감사인 감사계약 이행결과 보고
 - 제52기 1분기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보고
 - 제52기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보고

- 제 52기 제 6 차 감사위원회 : 2020. 7. 30 (목) 개최

[안건 통지일 : 2020. 7. 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용선	조성일	이젼마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보고안건
 - 해외부동산 투자현황 부문 감사결과 보고
 - FY2020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보고

- 제52기 제7차 감사위원회 : 2020. 9. 24 (목) 개최

[안전 통지일 : 2020. 7. 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용선	조성일	이젼마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전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미고

1) 보고안전

- 제5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보고
- 제52기 반기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및 핵심감사항목의 선정 보고
- 제5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검토결과 보고
- 해외대체투자 및 재매각 현황 부문 감사결과 보고

- 제 52기 제 8 차 감사위원회 : 2020. 11. 26 (목) 개최

[안건 통지일 : 2020. 11. 2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용선	조성일	이젼마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감사결과 직원 조치 요구(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업무인계인수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보고안건

- 제 52기 3분기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

- 제 52기 제 9 차 감사위원회 : 2020. 12. 23 (수) 개최

[안건 통지일 : 2020. 12. 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정용선	조성일	이젼마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감사보조조직의 장 업무대행 처리결과 추인(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2020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2020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평가

미래에셋대우는 감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매회 감사위원회 개최 후 결과를 이사회 위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이를 검토하고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 회 이상 감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위원회 역할,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감사위원회 운영 모니터링 및 의사록 등 자료에 대한 서면조사, 모든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이사회 최종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2020 년 감사위원회 평가는 2021 년 1 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감사보조조직을 둘 수 있으며(감사위원회규정§20), 감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14)

감사보조조직으로는 감사위원회 예하 감사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감사본부장 외 감사1,2팀 28명, 상시컨설팅팀에 전문인력인 공인회계사1명을 포함한 12명 등 총 41명으로 구성(2021년 1월 기준)되어 있습니다.

감사보조조직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이에 근거하여 종합감사, 부문감사 및 기획테마감사, 상시감사 등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감사활동에 대한 결과와 감독기관 수검 결과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위험관리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설정하고 전사적 위험관리 업무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회사 경영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미래에셋대우 이사회 이사 중 위험관리 분야의 전문가들로 별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 산하에 위험관리운영위원회·투자심사운영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회사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시장상황, 사업계획, 운용현황, 대외규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액 규모를 기준으로 회사의 위험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2020년 위험한도 설정 시, 회사의 연간 사업계획과 수익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소

위험부담 수준을 반영하였으며, 예비한도 확보를 통해 사업계획상 실행가능성이 유동적인 투자/운용 건 및 제도변경 등에 따른 위험액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2020년 총 3회의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회사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 및 회사 내 자산운용 부서별 수익목표를 점검 한 후, 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적정 재무건전성 비율을 고려하여 회사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 유형별로 회사가 연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수준과 자산운용부서가 분기 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수준 등으로 구분하여 회사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회사의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의 투자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투자한도와 관련된 규제사항 및 모범규준을 점검하고, 회사의 자기자본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총량적 투자한도(신용공여·우발채무·부동산투자)·기업집단별 총 투자한도·동일인에 대한 총 투자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주요한 단일투자에 대해서 건별로 투자를 승인하고 있

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2020년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주요한 단일투자 총 1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적정투자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회사의 투자한도 소진상황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회사 내 투자 전담부서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투자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회사의 적정 투자한도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이사회는 당사의 기본규정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기본규정인 위험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제·개정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회사의 위험관리 관련 일반규정을 제·개정합니다. 세부적 내용을 정한 세칙 및 지침의 경우 위험관리운영위원회·투자심사운영위원회에 제·개정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인 위험관리일반규정의 개정이 1건 있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을 위해 금융투자업자 관련 외부 규제사항, 모범기준 및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을 위한 별도의 변경사항이 없었습니다.

마) 기타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의 주요 위험현황을 점검하고 회사의 종합적 위기관리체계를 관리할 의무 및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는 2020년 중 회사의 주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관리현황, 회사의 주요 투

자 건에 대한 진행사항, 회사내 위험자산 편입현황, 회사 및 영업부문별 위험 한도 소진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위험관리 관련 정책결정 사항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점검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정책결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는 대외 규제 환경 변화의 방향 및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회사의 위험관리 정책 및 주요 위험 관리방안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 위험관리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회 위원 중 위험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 3인(대표이사 1인 및 사외이사 2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적절한 수준이며, 위험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적절히 집행할 수 있는 대표이사의 위원 선임을 고려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2기 제6차 이사회(2020년 3월 25일)에서 위원회 구성의 변화로, 이점마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0년말 위험관리위원회는 모두 3명의 이사(2명의 사외이사, 1명의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중 재임하였던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주 1)}	임기 만료일
조성일	사외	위원장	'19.05.08	'21.03.24
황건호	(前)사외	위원	'18.03.27	'20.03.25
이젼마 ²⁾	사외	위원	'20.03.25	'21.03.24
조웅기	상임	위원	'17.03.24	'21.03.24

주 1) 최초 선임일 기준임

주 2) 제 52 기 제 6 차 이사회(2020.03.25)에서 위원 변경

3)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당사는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규정 제 7 조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 중 3 인 이상의 이사로서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외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회 위원 중 위험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 3 인(대표이사 1 인 및 사외이사 2 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조성일 위원장은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험을 다수 보유한 금융업 전문가이자, 20 여년 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영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경영전문가로서 당사 위험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되어 선임되었습니다.

이젼마 위원은 재무학박사이며,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로 재직중으로 재 무, 회계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당사 위험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되어 선임되었습니다.

조웅기 위원은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 등 다년간 금융업에 종사하였고, 금융상품 사업부문, 리테일 및 법인 영업, 기업금융업무 등 다양한 금융투자업무 분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다년간 경영진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금융비즈니스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진 금융 투자 전문가로서 당사 위험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되어 선임되었습니다.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0년도에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6회 소집되었고 위원들의 100% 참석으로 인해 실질적인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결안건 12건, 보고안건 9건이었습니다.

의결안건은 회사의 연간 및 분기별 총 위험액 한도 설정, 주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설정, 회사의 주요 투자 집행 및 한도변경 등에 대한 승인 사항이 의결되었습니다. 보고안건은 건전성 비율 및 전사한도 사용현황, 투자한도 및 변경현황에 대한 안건이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각종 위험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회사의 위험상황 분석, 주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관리 현황 등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제 52 기 제 1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01.16 오전 09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20.01.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조웅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2020년 1분기 위험액(VaR) 한도 설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신용공여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⁴⁾ 우발채무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 호안건 ⁵⁾ 부동산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건전성 비율 및 전사한도 사용 현황 총 1 건 보고
- 2) 재무건전성 유지와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위험액(VaR) 한도 배분
- 3) 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변경
- 4) 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우발채무 한도 재배분
- 5) 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부동산 한도 재배분

- 제 52 기 제 2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01.30 오전 08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20.01.2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조웅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1)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조직변경에 따른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신규 구성

- 제 52 기 제 3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02.20 오전 09 시 30 분
[안건 통지일 : 2020.02.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황건호	조웅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1) 쌍용양회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주선 및 참여의 건 (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1) '쌍용양회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주선 및 참여'관련 투자 승인 요청

- 제 52 기 제 4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04.23 오전 10 시 45 분

[안전 통지일 : 2020.04.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이젠펠	조웅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동일거래상대방 전사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우발채무 한도 中 CDS 보장매도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3 호안건 ⁴⁾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위원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국민은행 동일거래상대방 임시한도 설정 등 총 5 건
- 2) 3 대 시중은행 전사한도 변경
- 3) 기 부여한 한도 대비 사용률이 낮아, CDS 보장매도 한도 축소
- 4) 인사발령에 따른 투자심사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 제 52 기 제 5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09.24 오전 10 시

[안전 통지일 : 2020.09.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이젠펠마	조웅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가. 1 호안건 ²⁾ 조기경보체계 개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³⁾ 위험관리일반규정 개정(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 호안건 ⁴⁾ 신용공여 한도 변경(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비고

- 1) 유동성리스크 관리현황 총 1 건
- 2) 비상계획 정기점검, 그룹 조기경보체계 시범운영 및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편, 단기금융업무 인가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지표 신설
- 3) [조기경보체계] 개편에 따른 규정 변경
- 4) 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변경

– 제 52 기 제 6 차 위험관리위원회 : 2020.12.23 오전 10 시 30 분

[안전 통지일 : 2020.12.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이젠펠마	조웅기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전 ¹⁾ 에 대한 의견	-	-	-	-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비고

- 1) 위험관리운영위원회 및 투자심사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등 총 2 건

3) 평가

당사의 위험관리위원회 지원부서는 동 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매회 위험관리위원회 개최 후 결과를 이사회 위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이를 검토하고 위험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 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위원회 역할,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위험관리위원회 운영 모니터링 및 의사록 등 자료에 대한 서면조사, 모든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이사회 최종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2020 년 위험관리위원회 평가는 2021 년 1 월에 실시하였습니다.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미래에셋대우는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을 전제로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구조의 조화를 바탕으로 보수체계가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래에셋대우 『이사회규정』 제 12 조 제 1 항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위원 변경 시까지 연속하여 재임이 가능하며, 임기 만료는 이사 임기 만료시까지입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 제 8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규정」 제 3 조에 의거 위원의 구성은 3인 이상의 이사로 하되, 사외이사를 대표로 하고 총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위원회는 총 3인(조성일, 정용선, 김성곤)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인의 위원 모두 사외이사이며, 조성일 사외이사가 보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어,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위원인 조성일 이사는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험을 다수 보유한 금융업 전문가이자, 20여년 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경영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경영전문가로서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정용선 위원은 1982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감독원 감독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금융업 전문가이자 재무, 회계 전문가로서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은 다수의 신약 개발 경력이 있는 유기화학 박사이며, 현재 (주)중근당 신약연구소인 효종연구소장 및 (주)중근당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신성장 전문가 및 경영 전문가로서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 보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정성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도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유무	약력
조성일	위원장	사외이사	-	現)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부총장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멀티에셋자산운용(주) 사외이사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사외이사 DGB 자산운용(주) 사외이사 키움증권(주) 사외이사
정용선	위원	사외이사	유	現)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現) 한국리츠협회 및 에이치더블유컨설팅 고문(비상근) 한국리츠협회 회장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삼성자산운용 사외이사 법무법인 화우 고문 금융감독원 증권시장담당 부원장보
김성곤	위원	사외이사	-	現) 종근당 효종연구소장/신약연구소장 종근당 의약화학/공정개발 담당 이사 Merck 선임연구원 KIST 위촉연구원
황건호	(前) 위원	사외이사	유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CEO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한국증권업협회 회장 메리츠증권(주) 대표이사(사장) 대우증권(주) 부사장
김병일	(前) 위원	사외이사	유	現)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전공교수 현대커머셜(주) 사외이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주)대현 상임감사 재무부/재정경제부(원)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주) 제 52 기 제 6 차 이사회(2020.03.25)에서 위원 변경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주1)}	임기 만료일
조성일	사외	위원장	19.5.8	'21.03.24
정용선	사외	위원	20.3.25	'21.03.24
김성곤	사외	위원	20.3.25	'21.03.24
황건호	사외	(前)위원	16.3.25	'20.03.25
김병일	사외	(前)위원	16.2.3	'20.03.25

주 1) 최초 선임일 기준

주 2) 제 52 기 제 6 차 이사회(2020.03.25)에서 위원 변경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위원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및 당사의 보수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1.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 항 각호의 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한 사항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 항 각호의 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 항 각호의 자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기타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사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해당 임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위원회는 2020년 5월 8일 개최된 제 3차 보수위원회에서 2020년 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심의·의결 하였고, 2021년 1월 28일 개최된 제 1차 보수위원회에서 2020년 성과보수 지급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위원회는 2020년 2월 20일 개최된 제 2차 보수위원회에서 ‘2019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 20일전까지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20년 5월 8일 개최된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정의와 성과보수 중 이연지급 비율, 이연지급기간, 이연지급액환수 등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성과보수 총액의 50%를 이연지급 하며, 이연기간을 3년으로 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당사의 보수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며, 동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합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미래에셋대우는 당사의 변동보상의 설계 및 조정, 지급형태 및 방식 등 지배구조법 및 당사의 성과관련 규정 전반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30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최종 점검하였습니다.

2019 년도에 대한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 규모 및 자본의 규모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미래에셋대우 보수위원회는 2020 년 2 월 20 일 개최된 제 2 차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보수위원회의 보수정책은 한국에 있는 미래에셋대우 내 모든 조직 및 해외사무소에 적용됩니다.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제 44 조에 따른 변동보수 대상자의 결정

2021 년 1 월 28 일 개최된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변동보수의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변동보수 대상자, 2020 년 12 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117 명	대표이사, 부문대표 등
금융투자업무담당자	78 명	운용 및 IB 부문 인력

[변동보수 대상자, 2019 년 12 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128 명	대표이사, 부문대표 등
금융투자업무담당자	88 명	운용 및 IB 부문 인력

10) 기타

해당사항 없음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미래에셋대우의 보수위원회는 당사의 보수위원회 규정 제 4 조에 의거, 위원장(현재 조성일 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0 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 제 6 조에 의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이 때,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출석위원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2020년에는 총 3 회의 보수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3 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여 성과보수 및 이연대상자를 결정하였고, 성과보수 집행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미래에셋대우의 성과보수제도가 회사의 재무상황,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설계 및 운영되는지 평가 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 제 52 기 제 1 차 보수위원회 : 2020 년 1 월 30 일 (오전 9 시)

[안건통지일 : 2020년 1월 23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황건호	김병일	조성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2019 년 단기성과보수 지급(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 년 장기성과보수 지급률 심의(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52 기 제 2 차 보수위원회 : 2020 년 2 월 20 일 (오전 9 시)

[안건통지일 : 2020년 2월 18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황건호	김병일	조성일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제 52 기 제 3 차 보수위원회 : 2020 년 5 월 8 일 (오전 9 시)

[안건통지일 : 2020년 5월 7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조성일	정용선	김성곤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
4. 의결안건				
가. 2020 년 단기성과보수 지급(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평가

당사의 보수위원회 지원부서는 동 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매회 보수위원회 개최 후 결과를 이사회 위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이를 검토하고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 회 이상 보수위원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위원회 역할,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보수위원회 운영 모니터링 및 의사록 등 자료에 대한 서면조사, 모든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이사회 최종 심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보수위원회 평가는 2021년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당사는 수익, 손익 영업목표 달성률 등 정량항목과 시장상황, 경쟁사 실적, 총위험액을 고려한 평가 등 정성항목을 주요 성과측정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성과측정 지표에 따른 결과를 부서/개인별 상여율에 연동시켜 성과측정과 보상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임원의 경우 담당조직별 조직평가(담당 부문/본부 목표달성·평가등급 반영)를 적용하였으며, 직원의 경우 개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위하여 업적평가(수행한 업적 기술), 역량평가(기본역량, 직무역량, 정책역량)의 두 가지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은 회사의 경영실적과 조직성과보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급규모를 결정하고, 담당조직(사업부문/본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인에 대한 성과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직원의 경우 각 조직별 손익 및 평가 등을 기준으로 조직의 성과보상 재원을 결정
정한 후, 상기 명시된 개인 평가결과를 반영한 기여도에 따라 개인에 대한 성과
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보수액 중 5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회사의 주가와 연동한
현금 등으로 3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법령이나 규정, 사규 등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 경영위
원회의 결정으로 이연된 성과보수액을 차감 및 환수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사
유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담당 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보수위원회
에 상정하여 차감 및 환수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액 결정시 이연보수 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지급확정되며, 이를 3년간 이
연지급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시점의 공정시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보수는 변동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 및 주식 등(주가와 연동한 현금 포함)으로 구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액 중 이연하지 않고 즉시 지급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이연되는 금액은 주식 등(주가와 연동한 현금 포함)으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이연대상자의 경우 성과보수 총액의 50%는 당해년도에(T년) 현금으로 즉시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주식 등(주가와 연동한 현금 포함)으로 3년간 이연지급 됩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미래에셋대우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직원의 도전의식 고취를 위해 성과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미래에셋대우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외에 일반 직원의 경우 그 직무가치 및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 또는 부문(본부) 손익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미래에셋대우는 당사의 보수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2020 년 보수위원회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사안이 없었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미래에셋대우는 보수위원회 결의 대상이 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규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미래에셋대우는 보수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개인의 성과와 보상간의 인과관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당사 사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점수화하여 성과보수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2020 년]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당해년도 (2020 년)	5,391.1	11,402.2	0.47	4,069	1.3

주 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당해년도 : 2020.01~2020.12

주 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해당 사업년도 기준 금액임
 - 당해년도 : 2020.01~2019.20

[2019 년]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당해년도 (2019 년)	4,450.6	8,930.0	0.50	4,233	1.1

주 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당해년도 : 2019.01~2019.12

주 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해당 사업년도 기준 금액임
 - 당해년도 : 2019.01~2019.12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2020 년]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수석 매니저	선임 매니저	매니저	대리	기타 ²⁾
당해년도	보수총액	583.0	1,617.3	1,896.6	854.9	133.0	306.3
(2020 년)	성과보수액	369.5	596.7	617.4	218.2	36.6	187.4

주 1)작성기준 : 해당 직급의 기간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주 2)영업점 PB 전문직 등

[2019 년]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수석 매니저	선임 매니저	매니저	대리	기타 ²⁾
당해년도	보수총액	439.0	1,268.2	1,621.0	787.4	141.7	193.3
(2019 년)	성과보수액	204.4	242.4	290.3	102.3	24.5	101.9

주 1)작성기준 : 해당 직급의 기간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주 2)영업점 PB 전문직 등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2020 년]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 1)}	기본급 ^{주 2)}	성과보수액 ^{주 3)}	
				이연지급대상	
당해년도 (2020 년)	임원	117	229.6	473.7	250.0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78	89.2	202.4	101.2

주 1) 해당년도중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주 2)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 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액' 으로 분류

주 3) 당해년도 : '20.1 월 ~ 12 월(이하 동일)

[2019 년]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 1)}	기본급 ^{주 2)}	성과보수액 ^{주 3)}	
				이연지급대상	
당해년도 (2019 년)	임원	128	234.6	364.6	178.1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88	96.0	191.4	95.7

주 1) 해당년도중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기재

주 2)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 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액' 으로 분류

주 3) 당해년도 : '19.1 월 ~ 12 월(이하 동일)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2020 년]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 1)}	주식연계 상품 ^{주 2)}	기타	
당해년도 (2020 년)	임원	473.7	223.7	-	250.0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202.4	101.2	-	101.2	-

주 1) 주식 : 2020 회계연도에 속하는 성과급 금액을 기재함

주 2) 주식연계상품 : 주식으로 이연되는 성과급의 합계액

[2019 년]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 1)}	주식연계 상품 ^{주 2)}	기타	
당해년도 (2019 년)	임원	364.6	186.5	-	178.1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191.4	95.7	-	95.7	-

주 1) 주식 : 2019 회계연도에 속하는 성과급 금액을 기재함

주 2) 주식연계상품 : 주식으로 이연되는 성과급의 합계액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2020 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당해년도 (2020 년)	임원	409.3	-	409.3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152.5	-	152.5

주 1) 이연보상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상액을 기재

주 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상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 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 으로 구분 기재

[2019 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당해년도 (2019 년)	임원	314.6	-	314.6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121.7	-	121.7

주 1) 이연보상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상액을 기재

주 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상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 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 으로 구분 기재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2020 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당해년도 (2020 년)	임원	409.3	-	-	409.3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152.5	-	-	152.5	-

[2019 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당해년도 (2019 년)	임원	314.6	-	-	314.6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121.7	-	-	121.7	-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2020 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 기	t-1 기	t-2 기	t-3 기	이전	
당해년도 (2020 년)	임원	409.3	235.0	127.1	47.2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152.5	101.2	44.4	6.8	0.1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 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상액을 '20 년(t 기) 발생분, '19 년(t-1 기) 발생분, '18 년(t-2 기), '17 년(t-3 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2019 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 기	t-1 기	t-2 기	t-3 기	이전	
당해년도 (2019 년)	임원	314.6	185.7	92.3	36.6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121.7	95.7	18.7	7.3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상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19 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상액을 '19 년(t 기) 발생분, '18 년(t-1 기) 발생분, '17 년(t-2 기), '16 년(t-3 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성과조정

[2020 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액 ^{주1)}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당해년도 (2020 년)	임원	14.7	14.6	0.1	409.3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2.7	2.7	-	152.5

주 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주가변동, 재무성과 등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상을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
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 2) 이연보상이 주가와 연동된 경우 주가하락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 3) 이연보상이 재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축소된 부분을 기재

[2019 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액 ^{주1)}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당해년도 (2019 년)	임원	18.1	18.1	-	314.6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2.5	2.5	-	121.7

주 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주가변동, 재무성과 등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상을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
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 2) 이연보상이 주가와 연동된 경우 주가하락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 3) 이연보상이 재무성과 등을 반영하여 축소된 부분을 기재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2020 년]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당해년도 (2020년)	임원	6	11.9	2.8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2019 년]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당해년도 (2019년)	임원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